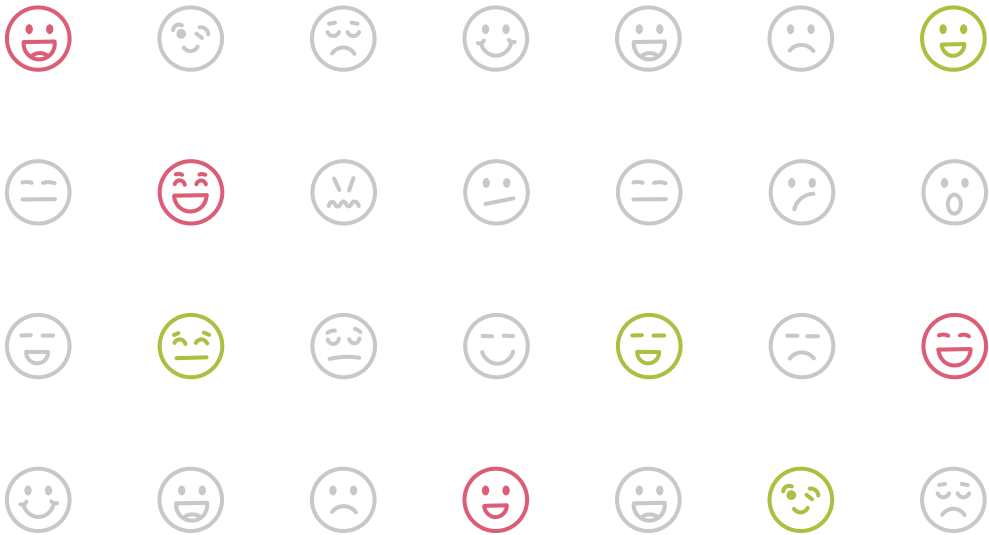




2024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어린이집·유치원 가이드북





# 2024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어린이집·유치원 가이드북

본 가이드북은 2024 교육부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에서 제작되었으며 교육부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예방·대응, 변화된 법률과 제도, 교육 및 보육 지원방안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으니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아이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CONTENTS \_목차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업무 흐름도 (기관별)	08
주요 용어 설명	10

## I 아동학대 개념과 이해

1. 아동인권 이해	18
2. 아동학대 정의 및 개념	20
3.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 및 판례	22
4. 아동학대 유사개념	36

## II 아동학대 예방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보육기관의 역할	40
2.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대응을 위한 교육·보육기관의 역할	41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46
4. 아동 및 보호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49
5. 무단결석·미인정결석 관리 및 대응	53

## III 아동학대 신고와 사안처리

1. 아동학대 신고 및 사후조치 흐름도	58
2. 아동학대 사안처리 흐름도	59
3. 아동학대 신고	61
4. 현장출동 및 조사	69
5.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조치	74
6. 사법처리 주요내용	79
7. 아동학대 관련 교육·보육활동 보호방안	81

## IV 피해 영유아 소통과 통합지원



- |                             |    |
|-----------------------------|----|
| 1. 피해 영유아의 이해               | 86 |
| 2. 피해 영유아와 소통 및 대화하기        | 87 |
| 3. 피해 영유아 중심 맞춤형 통합지원       | 94 |
| 4. 피해 영유아 통합지원을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 | 97 |

## V Q&A



- |                      |     |
|----------------------|-----|
| 1.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주요 Q&A | 102 |
|----------------------|-----|

## VI 부록



- |               |     |
|---------------|-----|
| 1. 각종 양식 (예시) | 116 |
| 2. 유관기관 목록    | 126 |



## 어린이집·유치원의 아동학대 대응 유의사항

- 평소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관찰과 상담에 우선적으로 노력합니다.
- 아동학대(의심) 사안이 발생하면 신고의무자로서 즉시 신고합니다.
- 아동의 소재 파악과 안전확보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수사기관의 조사와 진행에 적극 협조합니다.
- 사후대처와 재학대 예방까지 단계별로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합니다.

##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업무 흐름도 (기관별)



### 발생 전

#### ○ 어린이집·유치원

##### 평상시

-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 확인
- 영유아, 보호자, 동료 교사 등의 제보에 관심
- 영유아, 보호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 신고의무자 교육
- 미인정(무단)결석 영유아의 소재·안전 확인 및 관리
- 취학의무대상자 관리

##### 징후발견

- 아동학대 의심 신고 필요성 확인
- 영유아의 신체 또는 정서적 이상 징후 기록 및 보호자 면담
- 필요시 유관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상담 등 연계

##### 응급상황시

- 위급상황으로부터 안전확보 및 보호
- 학대(의심)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도착 전까지 영유아 보호방안 마련
- 병원 이송 및 응급조치

#### ○ 교육(지원)청(유치원) 지자체(어린이집)

- 아동학대 예방 지원 및 관리
- 아동학대 피해영유아 인권보호 및 지원방안 마련
- 지자체 정보연계협의체 회의 참석 및 협조
- 교육(지원)청 취학의무대상자관리(취학관리전담기구 업무 등)



### 신고

#### ○ 어린이집·유치원

- 아동학대 의심신고 및 신고내용 비밀엄수
- 아동학대 증거 확보
- 관리자 및 지자체(어린이집), 교육(지원)청(유치원) 보고
- 피해 영유아 보호를 위한 긴급대책 마련

#### ○ 교육(지원)청(유치원) 지자체(어린이집)

- 아동학대 사안처리 지원 및 관리
- 아동학대(의심) 사례 관련 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조사 시 협조
- 피해 영유아 지원 체계 연계 및 협조
- 기타 유관기관(지자체, 경찰, 아동권리보장원 등) 대상 업무협조
- 교육(지원)청 아동학대 관련 주요 교육 지원(비밀전학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지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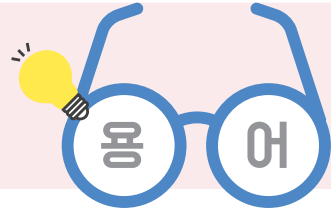
- 시·군·구 긴급전화 신고접수
- 경찰 신고·접수 통보 및 동행출동 요청
- 기초정보 파악

#### ○ 경찰

- 112 신고접수
- 현장출동(\*지자체 동행협조)
- 지자체 신고·접수 통보 및 동행출동 요청
- 현장 확인 및 영유아의 안전확보



## 주요 용어 설명



※ 본 가이드북에서는 취학 전 아동을 영유아라 칭함



###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용어

유아	→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
영유아	→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호
유치원	→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어린이집	→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
방과후과정	→ 「유아교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	「유아교육법」 제2조 제6호
보육	→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2호



## 아동학대 관련 용어

- 
- 아동** → 18세 미만의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1호, 국제연합 아동권리협약 제1조  
 ※ 단,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경우 그 연장을 피해아동이 성년(만 19세)에 도달하는 때까지 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51조 제3항
- 
-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2호
- 
- 피해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제8호  
 →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6호  
 ※ 본 가이드북에서는 피해아동을 피해영유아라 칭함
- 
- 피해아동 등**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1항  
 ※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임시후견인 선임에 있는 개념
- 
- 장애아동** →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함. 다만 6세 미만(개정법률 시행되는 2025년 1월 3일부터 '9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대상을 포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 
- 특수교육 대상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선정된 사람.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평가된 대상자이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 범죄** →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 ◆ 아동학대의 유형

<b>신체학대</b>	→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3호
<b>정서학대</b>	→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
<b>성학대</b>	→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성적 가혹행위로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2호
<b>유기</b>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로 두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b>방임</b>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아동보호 전문기관	<p>→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도록 하여 설치한 기관</p> <p>「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9호</p>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p>→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에 배치한 공무원</p> <p>「아동복지법」 제22조 제3항, 제4항</p>
친권	<p>→ 친권자인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거소를 지정하며, 그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 「민법」 제913조, 제914조, 제916조, 제920조로서, 친권자는 미성년의 자의 “법정 대리인”이 됨</p> <p>※ 자녀가 계약 체결 당사자가 될 때 대리권, 여권을 만들 수 있는 권리, 입학, 전학, 퇴학, 유학 등 신분 관계 변동 시 동의권, 주민등록 이전을 할 수 있는 권리 등 포함</p>
양육권	<p>→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 보호·교양할 권리로 직접 자녀를 곁에 두고 생활을 같이하며 보호하고 키울 수 있는 권리. 일반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은 함께 존재하나 이혼 등으로 분리될 수 있음</p>
미성년 후견인	<p>→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 행방불명되거나 친권상실의 신고를 받아 친권자가 없어진 경우, 부모가 친권의 일부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신고를 받거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친권자를 대신하여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법정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자</p> <p>「민법」 제928조</p>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p>→ 보건복지부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신속하게 찾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시스템</p>
집단시설	<p>→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해당</p>



## 아동학대 사건처리 관련 용어

### 현장출동

→ 아동학대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없이 아동학대범죄현장으로 출동해야 함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 응급조치

→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1호.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호.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 등으로부터 격리, 3호. 피해아동 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호.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하는 조치를 하는 것으로 2~4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음. 다만 조치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된 경우로서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8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 긴급 임시조치

→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직권이나 피해아동 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1.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 제19조

### 임시조치

→ 수사단계에서의 임시조치

- 임의적 임시조치 :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

- 필요적 임시조치 :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경우 검사는 임시조치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

→ 재판단계에서의 임시조치

-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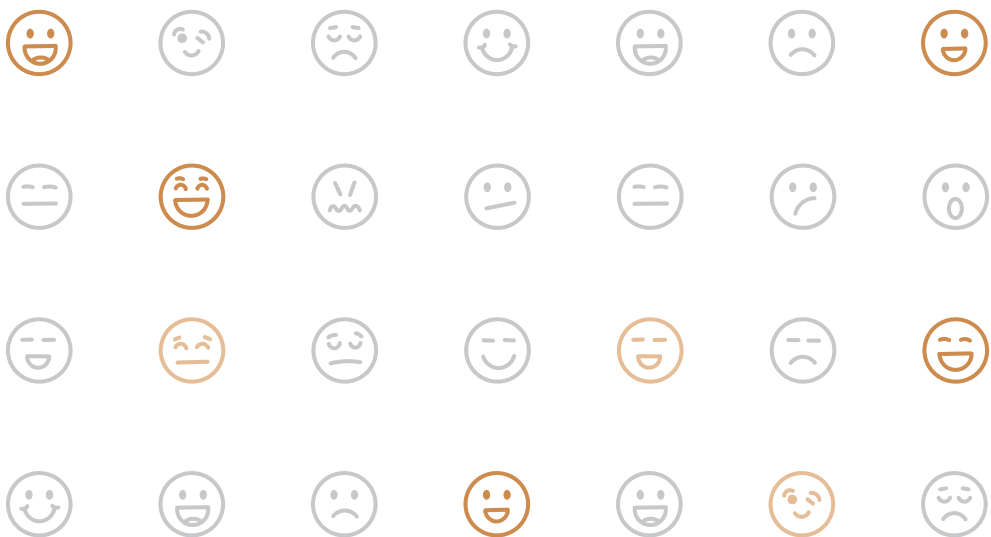


## 아동학대 사건처리 관련 용어

<b>보호처분</b>	→ 아동보호사건의 심리의 결과 판사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접근금지, 보호관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의 상담위탁 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
<b>피해아동보호명령</b>	→ 판사는 직권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접근금지·친권에 대한 조치,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등의 피해아동 보호명령 결정을 할 수 있음. 보호처분과 달리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로서 명령임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b>임시 보호명령</b>	→ 판사가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임시로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하는 것	「아동학대처벌법」 제52조
<b>피해아동 국선변호사</b>	→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을 위하여 「아동학대처벌법」,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에 관한 규칙 등을 근거로 검사가 지정하는 국선변호사로서, 아동보호사건 또는 형사 재판의 종결 시까지 피해아동을 조력함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b>보조인</b>	→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 보호명령에서 각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가 변호사 등 자신을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할 수 있는데 이를 보조인이라 하며, 피해아동의 경우는 신청으로 국선보조인을 지정받을 수 있고, 수사단계에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있다면 그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48조, 제49조
<b>원가정보호</b>	→ 피해아동을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주 양육자에 의해 계속적으로 보호 받고 있는 경우	
<b>분리조치</b>	→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주 양육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경우, 종래 양육되던 환경을 떠나 다른 누군가(예: 친권자, 친족, 시설 등)에게 보호되는 경우 모두 해당	
<b>가정복귀</b>	→ 아동학대로 원가정에서 분리 보호된 아동이 원래 가정으로 복귀된 경우	

# 2024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어린이집·유치원 가이드북



# I

## 아동학대 개념과 이해

1. 아동인권 이해
2. 아동학대 정의 및 개념
3.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 및 판례
4. 아동학대 유사개념

## 01

## 아동인권 이해



## 아동인권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자유에 더하여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를 의미

## 가. 유엔아동권리협약

- 전 세계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989년에 만들어진 국제 협약. 여기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의미하며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는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담김

## 아동의 기본권

## 생존권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 보호권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 나. 아동권리헌장

- 2016년 5월 2일 보건복지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아동권리헌장〉 제정
- 전문과 9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아동권리헌장은 아동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고 어른도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 약속을 의미
- 아동권리헌장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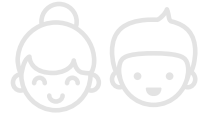
### 아동권리헌장 주요 내용

-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
-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 존중받을 권리
-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개인적인 생활이 보호받을 권리
-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
-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



## 02

## 아동학대 정의 및 개념



## ◎ 아동학대 관련 정의

##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1호  
「국제연합 아동권리협약」 제1조

##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성년)을 말한다.

「민법」 제4조

##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2호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열거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형법」에 의한 죄 :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 추행, 명예훼손, 모욕, 강요, 공갈, 재물 손괴 등
- 「아동복지법」에 의한 죄 :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유기, 방임 등
-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중상해, 상습범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 ‘아동학대범죄’는 아동학대행위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함으로써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보다 좁은 개념

## ◎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의 개념

###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8호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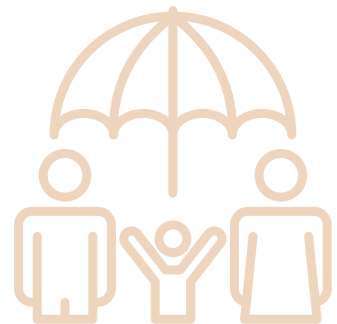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6호

###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5호

※ 따라서 아동학대범죄를 직접 범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도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행위자에 해당한다.



## 03

##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 및 판례



## 가. 신체학대

## 신체학대(Physic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 학대(의심)행위의 예시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음, 조르고 비틀, 할퀴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보폭한 도구로 찌름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들, 신체 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잡음, 아동을 던짐, 거꾸로 매달, 물에 빠트림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힘, 화상을 입힘 등)

**신체적 징후**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치료하지 않아 방치되거나 악화된 상처 및 부상
-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
- 발생 및 회복에 시차가 있는 상처
- 구타 및 물린 것으로 보이는 상처
- 입술, 잇몸, 눈, 손목, 발목 등 부위의 상처
- 겨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고막 천공이나 귓불이 찢긴 상처와 같은 귀 손상
- 긁히거나 물린 자국에 의한 상처
- 머리카락이 뜯겨나간 자국
-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자국, 알고 있는 물체 모양(다리미 등)의 화상 자국, 회복 속도가 다양한 화상 자국

**참고**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발견·확인할 수 있는 신체적 징후

- 골격계 손상, 시차가 있는 골절, 치유 단계가 다른 여러 부위의 골절, 복합 및 나선형 골절, 척추 손상(특히, 여러 군데의 골절), 영유아의 긴뼈에서 나타나는 간단 골절, 회전상 골절, 걷지 못하는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대퇴 골절, 골막하 출혈의 방사선 사진, 골단 분리, 골막 변형, 골막 석회화
- 대뇌 출혈, 망막출혈, 양쪽 안구 손상, 머리카락이 뜯겨나간 두피 혈종 등을 동반한 복잡한 두부 손상
- 간혈종, 간열상, 심이지장 천공, 궤양 등과 같은 복부 손상
- 폐 좌상, 기흉, 흉막삼출과 같은 흉부 손상

**행동적 징후**

- 상대방의 작은 동작에도 놀라거나 방어적인 태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 및 가족에 대한 거부감과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
- 어른과의 접촉을 회피하거나 놀라는 모습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내는 모습
- 위험에 대해 지속적인 경계
- 상처나 부상에 대한 불평
- 결석이 잦고 떨어지는 집중력
- 공격적·적대적·폭력적인 행동

## 판례로 보는 신체학대 사례

## 학대행위자가 부모 등인 경우



## 친모가 아동의 한쪽 팔을 양팔로 잡아끌음

- 피고인은 피해아동(6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전남편과 이혼하여 모친 집에 거주하며 피해아동을 함께 양육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피해 아동의 양육을 모친이 혼자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모친과 피해아동의 양육문제로 불만을 품고 피고인이 아들을 양육하겠다고 주장을 하며 지속적으로 다툼을 하여왔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아파트 상가에서 피해아동을 발견하고 피해아동에게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거부하자, 피해아동을 강제로 안으려고 하였고, 그곳에 있던 태권도 강사가 이를 막아섰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아동의 한쪽 팔을 양팔로 잡고 강하게 수차례 잡아끌었다.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1665]



## 당구채로 피해아동의 손바닥 및 엉덩이를 때림

- 피고인은 피해아동(6세)의 보호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잘못을 하고도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구채로 피해아동의 손바닥 및 엉덩이 부위를 약 5대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3154]



## 판례로 보는 신체학대 사례

## 학대행위자가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인 경우



## 마스크를 눈 주변까지 올려 씌우고 팔을 잡아당겨 팔꿈치 탈구상을 입게 함

- 어린이집 교사가 교실에서 피해아동 E(남, 1세)가 마스크를 코끝 아래로 내려쓰고 다닌다는 이유로 E의 양팔을 뒤로 잡았다가 차렷 자세를 하게 한 후 마스크를 눈 주변까지 올려 씌우고, 그물망에서 터널놀이하던 피해아동 D(남, 1세)가 터널 중간에 머물며 터널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팔과 옷을 잡아 당겨 터널 밖으로 꺼내고, E가 D에게 놀이기구인 교구를 던졌다는 이유로 손으로 E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E가 다른 아이 옷을 잡아당긴다는 이유로 E를 힘껏 끌어 당겨 눕혔다가 재차 구석에 양반다리 하게 하여 앉게 한 후 양발 끝으로 E의 발목, 다리 부분을 2회에 걸쳐 약 13초 정도 밀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E를 바로 눕혀 차고 있던 기저귀를 갈아주던 중 E가 다리를 뺀자 몸쪽으로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 손으로 E의 양팔을 잡아 당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우측 팔꿈치의 탈구상을 입게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21노3373]



## 울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머리와 얼굴을 때림

- 피고인은 유치원 원장실에서 피해자가 유치원 교실에서 다른 아동 B의 손가락을 물은 일에 대해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B에게 물게 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울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벗은 실내화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19노1661]



##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함

- 피고인 A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는 어린이집 원장이다. 피고인 A는 교실 내에서 피해아동 F(만 5세)가 글쓰기 연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쪽 팔을 강제로 잡아당기고 손가락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입 부위를 1회 찌른 것,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키며 장난감을 치우도록 하고 피해아동이 다가오자 배 부위를 1회 찌른 것, 피해아동을 훈육하면서 손가락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는 피해아동의 코 부위를 1회 찌른 것, 교실 내 개수대 앞에 서 있는 피해아동의 정수리 부위를 손가락으로 수회 찌른 것을 비롯하여, 약 2개월간 16회에 걸쳐 3명의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는 자신의 사용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과 감독을 하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1370]

## 나. 정서학대

### 정서학대(Emotion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 학대(의심)행위의 예시



-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가족 내에서 따돌리거나 가정폭력 상황에 노출되는 행위
- 장시간 아동만 방치하거나 혼자 두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 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등)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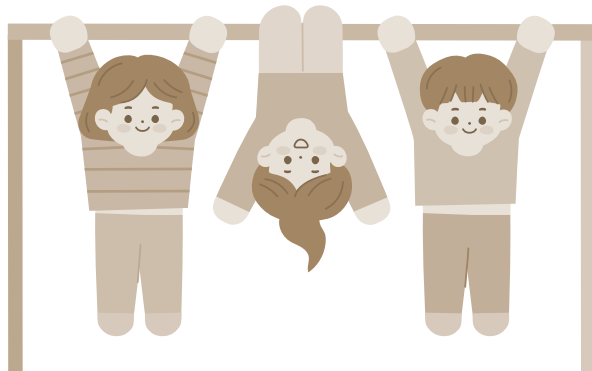
### 신체적 징후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언어 및 신체 발달 저하
- 탈모
- 수면장애
- 식이장애로 인한 위궤양, 복통

**행동적 징후**

- 신경성 기질 장애(놀이장애)
- 정신 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 언어장애
- 실수에 대해 과도한 걱정과 불안한 모습
- 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
- 특정 물건을 계속 밟고 있거나 물어뜯는 행동
-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판례로 보는 정서학대 사례

## 학대행위자가 부모 등인 경우



## 자녀를 불이 꺼진 화장실에 가두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동생이 목격하도록 함

-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C생), D(여, E생)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9년 봄 또는 가을경 아침에서 점심 무렵 사이 피해아동 B(당시 8세)이 말을 듣지 않고 친구와 놀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을 불이 꺼진 화장실에 가두고 문을 닫아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약 10분간 문을 잡고 있는 방법으로 감금하고, 피해아동 D(당시 5세)가 이를 목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928]



## 친모가 자녀가 보는 앞에서 자녀의 형제를 때리고 자녀의 형제에게 욕설을 함

- 피해아동 A(남, 6세), B(남, 4세), C(남, 3세)의 친모가 피해아동들의 친부와 이혼을 한 후 피해아동들을 홀로 양육하던 중, C가 있는 자리에서 A와 B를 때리고 욕설을 하여 C로 하여금 위와 같은 폭행 및 욕설 행위를 보고 듣게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20고정1906]



## 학원 친구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친구의 모친이 가해 친구에게 폭언과 함께 소리를 지름

- D 아동의 모친이 D와 같은 합기도 체육관에 다니고 있는 피해아동 B(남, 6세)와 C(남, 6세)가 평소 D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합기도 체육관 통학차량을 타고 하원하는 D를 기다리던 중 통학차량이 도착하자 뒷좌석에 탑승하여 B에게 “한번만 더 괴롭히면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손으로 목살을 잡아 흔들고, C에게 “괴롭히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가슴 부위를 잡아 흔들었다.

[대구지방법원 2021고정559]



## 맨발로 밖으로 쫓아낸 후 문을 잠그고 세워둠

- 피고인은 피해아동(4세)이 밥을 먹지 않고 TV를 시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을 맨발로 주거지 밖으로 쫓아낸 후 문을 잠그고 약 5분간 문밖에 세워 두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고단712]

## 판례로 보는 정서학대 사례

## 학대행위자가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인 경우



## 피해아동과 반복적으로 싫다는 말을 주고 받음

-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여, 20개월)이 “싫어”라고 말하자 보육교사가 피해아동을 자신의 앞에 앉혀 놓은 다음 “나도 너 싫어, 나도 싫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약 15분 이상 피해아동과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말을 주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2659]



## 유치원 교사가 피해아동을 뒤로 넘어뜨린 후 다른 아동에게 사과하게 함

- 피고인은 유치원의 교사이고, 피해아동 D(6세)는 위 유치원에 다니는 원생이다. 피고인은 위 유치원 ○반에서, 피해아동이 의자에 바르게 앉아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발로 의자를 걸어 건드려 피해아동을 뒤로 넘어뜨린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아동에게 ‘너 때문에 다른 친구가 피해를 입었다. 어서 사과해’라고 하며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그 옆에 있던 다른 아동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도록 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2585]

## 다. 성학대

### 성학대(Sexu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 학대(의심)행위의 예시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애무에 의한 성행위 등)
-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 추행, 성기 추행, 항문 추행, 기타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 신체적 징후



- 소변 또는 대변을 볼 때 통증 호소(대변의 혈액)
- 성기 부위의 통증 호소
-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
- 옷(속옷)이 찢겨 있거나 피에 젖어 있거나 얼룩져 있음
- 입천장의 손상



### TIP!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발견·확인할 수 있는 신체적 징후

- 성병 감염
- 잦은 요로감염 및 질 감염
- 질이나 음경에 고름, 분비물
- 회음부나 항문 근처 멍, 출혈
- 성기 부위의 통증, 부어오름, 가려움증

**행동적 징후**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속한 성 지식
-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 지나치게 자주 오랫동안 씻거나 씻겨 달라는 행동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자존감이 낮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
-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늘어날 정도로 달라진 식습관
-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 비밀로 하려는 모습
- 불안해하고 쉽게 잠들지 못함. 악몽을 꾸는 등 공포감
-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등 퇴행 행동
- 혼자 있기를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혼자 있으려고 하는 모습
-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 집중을 못 하는 모습
- 식이장애, 섭식장애(폭식증, 거식증)

## 판례로 보는 성학대 사례

## 학대행위자가 부모 등인 경우



## 창문 너머 피해자에게 비키니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모델 선발대회 동영상 보여줌

- 피고인은 유치원 1층 건물 밖에서 그곳의 반쯤 열린 창문 너머로 피해자(여, 7세)를 발견하고, 위 창문에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피트니스 모델 선발 대회 동영상'이 재생 중인 휴대폰 화면을 들이대고 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1996]

## 판례로 보는 성학대 사례

## 학대행위자가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인 경우



## 유치원 종사자가 수업 중 원생을 추행함

- 피고인은 원생들을 상대로 골프강습을 담당하던 사람으로 유치원 종사자이다. 피고인은 유치원 3층 골프연습장에서 원생들을 상대로 골프강습을 하던 중, 가장 먼저 골프 타석에 들어선 피해자 E(여, 5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자세를 교정하면서 "이렇게 하면 잘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었다. 또한 'D' 원생들을 상대로 골프강습을 하던 중, 골프 타석에 선 피해자 F(여, 5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자세가 흔들리는 것을 잡아 준다며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넣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합104]

## 라. 방임 및 유기

### 방임 및 유기 (Neglect)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 학대(의심)행위의 예시



-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의 미인정결석(무단결석)을 방치하는 등 아동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 신체적 징후



- 끊임없이 배고파하는 모습
- 개인위생이 불량하며 개선되지 않는 지저분한 상태
- 지속적 약취
-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불량한 건강 상태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행동적 징후



-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 나이에 비해 몸무게가 지나치게 적거나 불균형한 신체 상태
- 부족한 사회성과 의사소통 능력
- 지속적인 피로 호소 또는 불안정감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음
- 음식을 구걸 및 훔치거나 먹는 것에 집착하는 모습

### 판례로 보는 방임 및 유기 사례

#### 학대행위자가 부모 등인 경우



#### 피해아동을 이종사촌이 살고 있는 주거지 앞에 두고 떠남

- 피고인은 피해아동 B(2세), C(2세)의 친부로서, 피해아동들의 친모인 F와 별거하면서 양육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F가 피해아동들을 피고인 아버지 집에 맡기고 연락을 끊어버리자 화가 나 피해아동들을 F의 이종사촌이 살고 있는 주거지 앞 출입문 복도에 두고 그대로 떠났다.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1370]

### 판례로 보는 방임 및 유기 사례

#### 학대행위자가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인 경우



#### 이불을 던지고, 우는 것을 보고서도 도와주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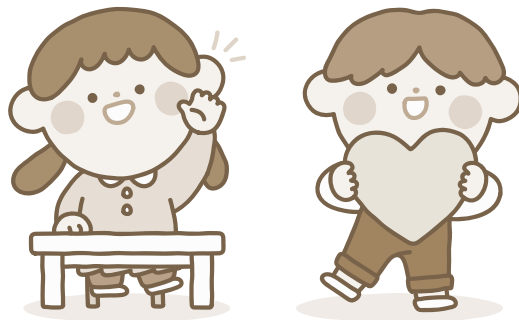
-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교실 구석 자리에 누워 있는 피해아동(3세)에게 이불을 던지고,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아동을 세게 잡아들어 이동시키고, 피해아동이 마스크 스트랩을 빼어내기 위해 울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을 보고서도 pc를 하면서 도와주지 않고, 아동 혼자 교실에 있음을 알면서 아이 혼자 교실에 두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합85]

**폭염인 날씨에 복도에 내보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피고인은 유치원 교사이다. 피고인은 유치원에서, 피해 아동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당일 온도가 최고 33.8도에 이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도에 내보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약 2시간을 교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1137]



## 04

## 아동학대 유사개념



## ◎ 아동학대 / 아동학대범죄 / 가정폭력 / 성폭력 비교

구분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주요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형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가해자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	보호자	가정구성원 (동거친족 포함)	제한 없음
피해자	아동 (18세 미만)	아동 (18세 미만)	가정구성원 (동거친족 포함)	제한 없음

## 참고

-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지원, 재학대 예방 등 사례관리를 위한 복지적 관점에서 수사·사법기관보다 포괄적으로 아동학대 여부 판단
  - 이와 달리, 경찰 등 수사·사법기관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범죄자 처벌 목적의 형사적 관점에서 아동학대범죄 여부 판단
  - ☞ 따라서, 지자체의 판단과 경찰 등 수사·사법기관의 판단이 다를 수도 있음

### ◎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

-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광의적 개념
- 아동학대범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아동학대로 인하여 「형법」등에서 규정한 소정의 죄에 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 ◎ 아동학대범죄와 가정폭력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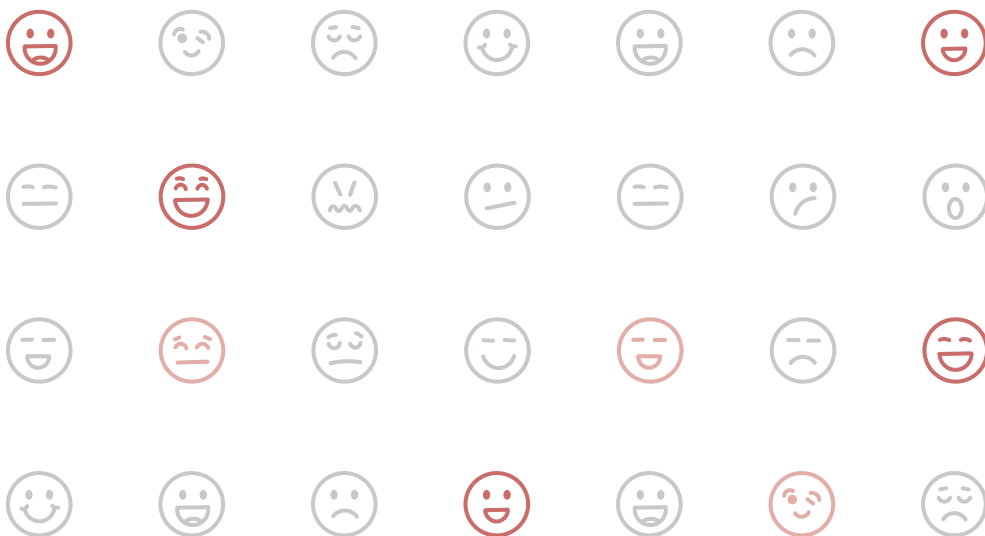
- 가정폭력범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가정구성원(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인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형법」 등에서 규정한 소정의 죄에 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 아동학대범죄(피해자가 18세 미만)에 대하여는 아동학대처벌법을 우선 적용함 「가정폭력처벌법」 제3조

### ◎ 아동학대와 성폭력

-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모든 폭력(신체적·심리적·언어적·사회적)행위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
- 누구든지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행위를 할 경우 「성폭력처벌법」 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고, 동시에 「아동복지법」(행위자가 보호자일 경우에는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으로도 처벌될 수 있음

# 2024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어린이집·유치원 가이드북



# II

## 아동학대 예방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보육기관의 역할
2.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대응을 위한 교육·보육기관의 역할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4. 아동 및 보호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5. 무단결석·미인정결석 관리 및 대응

## 01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보육기관의 역할



## 가. 교육·보육기관의 역할 - 어린이집·유치원

구분	역할
아동 권리 존중 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권리 존중 조직문화 조성, 아동학대 감수성 증진</li> <li>- 아동 행동의 이해와 원인 파악 및 대처</li> <li>- 아동학대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인식</li> <li>-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정 지원과 소통</li> <li>- 아동 권리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li> </ul>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상시 아동의 건강과 안전 확인 및 관리</li> <li>- 평상시 무단결석·미인정결석 등 아동 소재 확인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무단결석), 유치원(미인정결석) 이하 동일 적용</li> </ul> </li> <li>- 아동학대 발견이나 의심 시 신속한 신고와 개입</li> </ul>
아동학대 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의무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용 점검표,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 영유아 보호절차,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호 등 교육               </div> </li> <li>- 교사 대상 사례 중심(권리존중 지도) 아동학대 예방 수시 교육</li> <li>- 아동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li> <li>- 보호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 오리엔테이션(어린이집), 입학 및 보호자 총회(유치원), 부모 참여 행사 시 대면 교육, 온라인 강의, 가정통신문(종이, 모바일), 예방교육 자료 홈페이지 탑재 등 적절한 방법 시행                  * 예방교육 자료 및 주요 사이트 참고 (가이드북 51페이지 참고)               </div> </li> </ul>

02

##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대응을 위한 교육·보육기관의 역할



### 가. 아동학대 대응 절차별 어린이집·유치원 역할

평상시 관리·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 확인</li> <li>- 보호자와 영유아의 일과 공유</li> <li>- 영유아, 보호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li> <li>- 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관리</li> <li>- 무단결석·미인정결석 및 퇴학(퇴소) 영유아 관리</li> <li>- 보호자 동의서(미인정결석 시 가정방문) 사전 취합</li> <li>- 영유아, 보호자, 동료 교사 등의 제보에 대한 관심</li> <li>- CCTV 설치 운영 및 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등 참고)</li> </ul>
-----------	--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관리·대응



대응 절차	어린이집·유치원의 역할
징후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의심) 징후 파악 등 아동학대 의심 신고 필요성 확인</li> <li>- 피해 영유아의 신체 또는 행동적 이상 징후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담 가능 시 면담 내용 기록</li> </ul> </li> <li>- 필요시 외부기관 및 전문가 자문,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 전문가 협조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아동의 의견진술 기회 확보 및 진술 조력 등</li> <li>* 보건교사(간호사 등) 협조 요청 가능</li> </ul> </li> </ul>
아동학대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 신고(112) 및 신고내용 비밀엄수</li> <li>- 아동학대 증거 확보(사진, 동영상 등)</li> <li>- 아동학대 사안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어린이집 원장 → 지자체 보고</li> <li>- 유치원 유치원장 → 교육(지원)청 보고</li> </ul> </li> <li>- 피해 영유아 보호를 위한 긴급대책 마련</li> </ul>

대응 절차	어린이집·유치원의 역할
응급상황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거나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병원 이송</li> <li>- 위험 상황으로부터 피해 영유아의 안전확보 및 보호</li> <li>- 학대(의심)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도착 전까지 피해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 또는 보호 방안 마련</li> </ul>
현장조사	<p><b>경찰, 지자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 영유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내 독립된 장소 마련</li> <li>* 필요시 피해 영유아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교사가 함께 조사에 참여</li> <li>- 조사 시 필요한 관련 자료(기관 현황, 원아명단, 교직원 명단), 피해 영유아 인적사항 확인, 보호자 동의서 확인 등 요청 협조</li> </ul> <p><b>유치원, 어린이집</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면담 대상자(담임교사 등) 조사 협조</li> </ul>
조치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 영유아의 정보 노출과 비밀 누설 금지</li> <li>- 지속적 관찰을 통한 피해 영유아 상태 확인</li> <li>-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li> <li>- 피해 영유아의 생활기록부(안전을 위해 변경된 주소 누가 기록 지양) 등 각종 기록 관리 및 보호지원</li> </ul>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 영유아 및 신고자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li> <li>- 피해 영유아에 대한 재학대 여부 지속 관찰</li> <li>* 피해 영유아의 학대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가정방문 등)가 어려울 시 피해 영유아의 안전점검 또는 일상생활 모니터링 협조할 수 있음</li> <li>- 재학대 의심상황 발생 시 112에 신고</li> <li>- 지자체 통합사례회의 참석 및 협조</li> <li>- 피해 영유아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심리치료 연계 지원</li> <li>- 유관기관과의 아동 보호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협력 등</li> <li>- 필요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상담 등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내 적절한 장소 제공 협조</li> </ul>

**TIP!** 보호자 동의서-미인정결석(무단결석)시 가정방문의 활용

- ❖ 2일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지자체의 공무원과 함께 가정방문을 할 수 있다는 동의서를 사전에 받는 것이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될 수 있음 [양식 5 관련]
- ❖ 아동의 소재 및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동의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사안에 따라 신고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함
- ❖ 퇴소신청서(어린이집), 자퇴(퇴학)신청서(유치원)에 아동의 인적사항 및 퇴소/자퇴희망일 외에 퇴소/자퇴 사유를 기재하는 란을 포함하여야 함
- ❖ 의도적으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보다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는 과정이 필요함

**어린이집의 협조가 잘 된 사례****신속한 신고 사례**

- ❖ 어린이집 담임교사 A씨가 7세 아동이 손을 들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겨드랑이의 멍 자국을 발견함. 통상적으로 다칠 수 있는 부위가 아니며,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한 듯한 멍 자국을 통해 반복적이고 은밀한 폭력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담임교사는 수업 중 인터넷을 통해 아동학대 선임교사와 원장에게 보고하였고, 반의 아동들을 다른 교사와 원장이 돌보는 동안 112에 신속하게 신고함

**조사 협력 사례**

- ❖ 6세 아동이 어머니에게 회초리로 발바닥을 맞아 제대로 견지를 못함. 양말을 벗고 싶어 하지 않아 의심되어 낮잠 시간에 양말을 벗겨 확인한 후 담임교사가 신고함. 아동은 양말을 벗어서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엄마와 함께 살 수 없을 것이라는 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음.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대면조사 시 거부감을 보여 담임교사가 입회하여 유아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유치원의 협조가 잘 된 사례



### 신속한 신고 사례

- ❖ 유치원 교사는 유아의 몸에 멍자국이 심하게 있어 유아에게 확인함. 유아는 아버지가 때렸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멍자국 및 유아의 진술 등 증거자료 확보 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신속하게 신고를 진행함. 신고 이후 경찰조사에 협조하며 유아를 아버지의 폭력에서 보호할 수 있었음



### 조사 협력 사례

- ❖ 아동학대로 신고받은 유치원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요청을 함. 유치원에서 신속하게 5세 유아 면담에 대한 보호자 동의서 수집 및 유아들이 편안하게 놀이하며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마련함. 이에 유아들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답변함으로써 아동학대 여부 사례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5세 유아전수조사를 잘 마칠 수 있었음



### 유치원 내 아동학대 합동조사 협력 사례

- ❖ 아동학대신고가 들어온 유치원에 교육지원청, 지자체, 경찰이 유치원과 협의하여 합동조사를 진행함. 경찰은 CCTV 확보 및 관련자 면담, 지자체는 유아 면담 및 담임교사, 방과후과정 교사 면담 등 진행, 교육지원청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사례판단 결과를 원장과 공유하고 피해유아 보호를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교육복지 및 교육 지원방안 안내 등)을 마련함

## 나. 관리기관의 역할 - 지자체, 교육(지원)청

대응 절차	주요 역할
평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 예방 지원 및 관리</li> <li>- 피해 영유아의 인권보호 및 위기가정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신고</li> <li>-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지자체 정보연계협의체 회의 참석 및 협조</li> </ul>
사안발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 사안처리 지원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아동 대상 학대 사안 발생 시 '교육(지원)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유치원)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공유</li> <li>※ 성학대 의심 사안 발생 시 '해바라기센터'와 공유</li> </ul> </li> <li>-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조사 시 관련 적극 협조</li> <li>- 집단시설 내 아동학대(의심) 사례 발생 시 지자체와 경찰의 합동조사 진행 협조 (피해(의심)영유아 보호자 조사 고지, 목격 영유아 보호자 사전동의, 자료제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제공의 예시 : 시설 이용 아동인원, 아동학대행위(의심)자 정보 제공 등</li> </ul> </li> <li>- 피해 영유아 지원 체계 연계 및 협조</li> <li>- 아동학대 관련 주요 교육 지원 (맞춤형 지원 등)</li> <li>- 유관기관(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대상 업무협조</li> </ul> <p><b>어린이집</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이를 보육활동침해로 볼 수 있는 경우,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에서 보육활동침해에 대한 보호조치 및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 4」</li> </ul> <p><b>유치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교육감 의견서 제출 「교원지위법」제17조 제1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할 수 있음 「교원지위법」제18조 제2항</li> </ul>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 영유아에 대한 재학대 여부 지속 관찰</li> <li>- 피해 영유아 회복을 위한 통합지원 적극 연계 협조</li> </ul>

03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4조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양식1>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가. 교육개요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6개 직군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 제2항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 (시간) 연간 1시간 이상 실시
- (방법)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 및 위탁 운영 기관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기관 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 (인터넷 강의) 복지부에서 제공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 또는 복지부에서 승인(콘텐츠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 인정
- (집합, 대면교육)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또는 필수 자격 요건 충족한 강사 교육

※ 「아동복지법」제26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 공공부문(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 신고의무자 모두에 해당하는 '중복 대상자'는
  - ①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이수 해야하며,
  - ② 해당교육 실적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에 각각 제출(실적입력) 해야 함



- 아동의 권리
-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및 관련 법령
-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신고의무, 신고요령 등)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보호제도
- 아동학대피해 영유아 보호 및 지원 절차
- 어린이집·유치원 및 교사의 역할 :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찰, 부모면담 시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 아동의 현장조사 및 상담 시 협조 등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에 관한 내용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근거하여 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피해아동 보호절차 3가지 내용 포함 필요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근거)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호의2, 동법 시행령 제58조

구 분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 과태료 부과에 앞서 연내 교육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독려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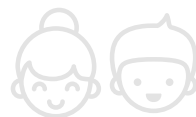


## 나. 신고의무자 교육 주요 사이트

사이트명	자료현황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edu.ncrc.or.kr)	①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수어포함 ②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Educational program on child abuse prevention'
중앙교육연수원 (neti.go.kr)	① (English Ver.)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②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sil.seoul.go.kr)	①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수어포함 ②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Educational program on child abuse prevention'
경기도 지식(GSEEK) (gseek.kr)	①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수어포함 ②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Educational program on child abuse prevention'
나라배움터 (e-learning.nhi.go.kr)	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영어자막) 2024년-1기 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한글자막 및 수어) 2024년-1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lms.educare.or.kr)	① (어린이집 종사자 대상)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② 2024 Educational program on child abuse prevention

04

## 아동 및 보호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31조 제1항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6의 교육기준에 따라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 가. 아동학대 예방 교육 - 아동 대상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6] 교육기준



교육대상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원 중인 영유아



실시주기  
(총시간)

- 6개월에 1회 이상(연간 4시간 이상)



교육방법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멀티미디어, 노래) 교육
4. 그림책 연계 활동, 인형극 활동



1. 나의 권리 찾기(소중한 나), 아동 권리 존중
2.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행위자 개념
3. 자기감정 표현하기 및 도움 요청하기
4. 신고 이후 도움받는 방법

**참고**  
 유치원 [교육부 학교 안전교육 7개 표준안 중 폭력 및 신변 안전]  
 - 아동학대의 이해 및 유형  
 - 아동학대의 신고 및 대처 방법



- 안전 관련 교육 및 교육과정과 연계 통합 실시 가능
-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교육내용 구성 및 선정
- 체험교육 또는 현장학습 연계
- 일상생활에서 지도 및 부모교육 연계

■ 예방교육 활용 자료 및 주요 사이트

관련기관	관련자료
보건복지부	<p> 보건복지부TV                      - 아동학대 예방교육 영상</p>
아동권리 보장원	<p> 아동권리보장원                      - “나를 지키면 행복할 수 있어요”</p> <p> 소통과참여-아동학대예방캠페인-자료실                      - 유라와 함께하는 이럴 땐 도움을 요청해요! (Feat. 보건복지부X 아동권리보장원)</p>
경찰청	<p> 대한민국 경찰청                      - 토닥토닥 꼬모와 함께하는 아동학대 캠페인                      - 아이가 위험해요 송♪ 우리동네 안전한 노란 동그라미가 있다고?! 아동학대예방교육                      -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나의 꿈을 지켜주세요”</p>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p>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영유아 안전교육(아동학대예방) 애니메이션] 웃음 가면                      - [영유아 안전교육(아동학대예방) 애니메이션] 이렇게 해주주세요.                      - [영유아 안전교육(아동학대예방) 애니메이션] 엄마는 언제 돌아올까요?</p>
유관기관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어린이재단	<p> 굿네이버스                      - [굿네이버스X주니토니X경찰청] 언제나 지켜주세요</p> <p> 어린이재단 초록우산                      -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아마존 소울리스좌'를 잇는 '귀염좌'들의 근거있는 주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Feat. 아기싱어 시안</p>

## 나. 아동학대 예방교육 - 보호자



교육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보호자



교육방법

- 오리엔테이션 또는 입학설명회, 보호자 대상 행사 시 부모 교육
- 교육자료 또는 가정통신문 배포, 자녀양육 및 아동학대 예방 영상 배포
-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취약계층 가족 상담·부모교육
- 아동학대 인식 제고와 신고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강화



교육내용

- 아동의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
- 민법상 징계권 폐지 계기 인식 개선
-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아동학대 정의, 아동학대의 유형 및 처벌, 아동학대 현황 및 사례, 아동학대 발생 요인 및 결과, 아동학대 후유증 등

- 아동학대 피해 영유아의 치료
- 영유아 발달특징 및 양육방법
- 아동학대 신고 절차 및 발견, 신고 시 유의사항
- 아동 권리존중 이해 및 의사소통 방법
- 아동학대 예방사업 안내
- 보호자의 역할

### ■ 예방교육 활용 자료 및 주요 사이트

관련기관	보호자 대상 예방교육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TV</li> <li>- 아동학대의 모든 것, 그것이 알고 싶다!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li> <li>-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의 첫걸음!! 우리 모두의 관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 소식-홍보자료-홍보동영상-아동학대 예방 동영상</li> </ul>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TV</li> <li>-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 양육 129원칙' - 오은영</li> <li>- 아이의 눈에 비친 당신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동학대예방 VR체험 인터뷰</li> <li>- 동상이몽 OX퀴즈, 이것도 아동학대라고요?</li> </ul>

관련기관	보호자 대상 예방교육
아동권리 보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권리보장원</li> <li>- 아이들의 행동에 존중하세요[아동학대예방CF]</li> </ul>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안전부</li> <li>- 아동학대에 상처받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li> <li>- 마음까지 멎게 하는 아동학대,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아동학대]</li> </ul>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 경찰청</li> <li>-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끔찍한 실화...우리 곁의 아동학대</li> <li>- 훈육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아동학대</li> <li>- "아빠가 집에 오시면 숨바꼭질을 한다."</li> <li>- [아동학대예방-안아줌Talk] 박지선, 심현규의 가정방문</li> </ul>
대검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 검찰나우</li> <li>- 아동학대 1편 - 사랑의 매는 없다!</li> <li>- 아동학대 2편 - 이럴 땐 신고하세요!</li> <li>- 아동의 수호천사, 검찰</li> </ul>
대한민국 대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 대법원</li> <li>- 아동학대 예방교육</li> <li>- 아동보호 절차 알아보기!(신고부터 사건 진행 절차,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까지! 가정법원 탐구생활)</li> </ul>
대한법률 구조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구공TV</li> <li>- 아동학대 예방 교육   Part 1, 2, 3   이수정 교수</li> </ul>
복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로</li> <li>-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영상</li> </ul>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E러닝</li> <li>-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론/사례편)</li> </ul>
유관기관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어린이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이브더칠드런</li> <li>- 남궁민 의사의 '현장에서 목격한 아동학대'</li> <li>-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li> <li> 굿네이버스</li> <li>- 굿네이버스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아동학대 국민감시단'</li> <li> 어린이재단 초록우산</li> <li>-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모들의 훈육이야기</li> </ul>

05

## 무단결석·미인정결석 관리 및 대응



\* 세부 절차 및 관리 방안은 각 시도 지침에 의함  
 ※ 어린이집(무단결석), 유치원(미인정결석) 이하 동일 적용

### 가. 무단결석·미인정결석 영유아에 대한 대응(안)

시기	조치 필요사항	비고
결석 1일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임교사는 유선으로 결석 사유와 영유아의 안전을 확인하고 다음 출석일을 확인</li> <li>- 유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원장·원감에게 보고하고 지속적 연락 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석인정범위 : 천재지변, 법정감염병, 미세먼지, 교외체험학습, 공권력행사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결석하는 경우(예:부모의 출산, 질병 및 부상 등</li> <li>- (유치원) 미인정결석 영유아에 대한 조치 결과 관리대장 작성 &lt;양식3&gt;</li> </ul>
↓		
결석 2일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시로 보호자에게 유선 연락을 실시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확인</li> <li>- 유선으로 영유아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직접 확인 (※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협조)</li> <li>- 가정방문은 교직원,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또는 관련 업무 담당) 직원으로 구성된 2인이 함께 실시</li> <li>- 가정방문 결과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영유아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112)에 신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의 신변 위협,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가정방문 단계(공문 통한 수사 의뢰 전)부터 원장이 유선으로 경찰 동행요청 가능</li> <li>- 민원상담, 실종신고 182로 문의</li> <li>- (유치원) 미인정결석 영유아에 대한 조치 결과 관리대장 작성 &lt;양식3&gt;</li> </ul>
↓		

시기	조치 필요사항	비고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기관에서 협조 요청시 영유아의 상태 등에 대해 안내 및 기타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li> <li>- 미인정(무단)결석 영유아가 재등원하였을 경우 영유아의 심리·정서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치</li> <li>- 원장은 해당 보호자에 대해 면담 또는 부모교육 등 실시</li> </ul>	

반복적 무단결석 미인정결석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규정에 의한 출석일수 미달 시 보육료 지원이 제한됨을 안내</li> <li>- 유치원 유아학비지원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 미달 시 학비 지원이 제한됨을 안내</li> <li>- 유치원 유치원 규칙에 의해 일정기간 이상 무단 결석 시 퇴학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li> <li>- 유치원 미인정결석 집중관리 대상자*는 관리카드에 세부 결석 이력 관리</li> </ul> <p style="margin-left: 20px;">* 집중관리 대상자: 소재·안전 미확인, 아동학대 우려, 자살관심군, 흡스쿨링 등의 사유로 학교장 또는 교육(지원)청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아동·청소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학습·교외체험학습 등으로 결석이 반복·지속되는 장기 미인정결석 영유아는 소재·안전 확인 이후에도 대면관찰 실시</li> <li>- 장기결석의 경우 출석인정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수시로 연락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확인</li> <li>- 아동학대 우려가 있을 경우 지역 내 유관기관협의체에 상세 안내</li> </ul>
----------------------------	---

## 나.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자퇴·퇴학(퇴소) 영유아에 대한 관리·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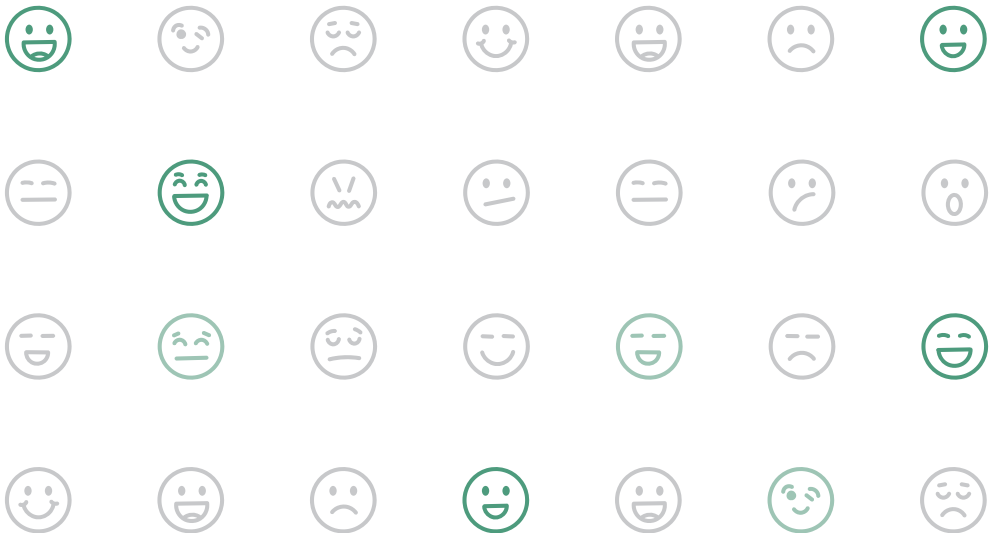
유형	보호자가 할 일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할 일
명확한 사유로 자퇴(퇴소)신청 시 (이사, 기관이동, 질병 등)	- 명확한 사유가 포함된 자퇴 신청서를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제출 <양식6>, <양식6-1>	- 자퇴(퇴소)신청서에 명확한 사유 확인 후 퇴학 처리 완료 - 유치원 e유치원시스템(유아학비지원 시스템)에 퇴학 등록 - 어린이집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및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퇴소 등록
명확한 사유없이 자퇴(퇴소)신청 시 (특히,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 아동(유아)를 동반하여 자퇴(퇴소)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영유아 동반을 요청하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유선으로 유아와 통화하여 소재 안전 확인 -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112)에 신고 - '가정양육'으로 전환 시 양육수당 대상임을 안내하고 퇴학(퇴소) 처리

- **입학(입소)** : 만 3세(0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기간 중 최초로 유치원(어린이집)에 들어감
- **자퇴(퇴소)** : 전출, 휴학 이외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우리 유치원에서의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중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는 불가)하거나 어린이집에서의 보육서비스를 중단함
- **퇴학** : 유치원규칙에 의해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박탈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는 불가)
- **출석인정**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피해 유아가 시설 입소나 학대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으로 유치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미인정(무단)결석**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사전에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연락하지 않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의 결석

(보육사업 안내 및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1, 2)

# 2024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어린이집·유치원 가이드북



# III

## 아동학대 신고와 사안처리

1. 아동학대 신고 및 사후조치 흐름도
2. 아동학대 사안처리 흐름도
3. 아동학대 신고
4. 현장출동 및 조사
5.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조치
6. 사법처리 주요내용
7. 아동학대 관련 교육·보육활동 보호방안

## 01

## 아동학대 신고 및 사후조치 흐름도

아동  
학대 신고

## 아동학대 최초 인지



## 수사기관(112) 신고

- 어린이집 원장 → 지자체 보고 / 유치원 원장 → 교육(지원)청 보고
- 112(경찰), 시군구 긴급전화(아동학대전담공무원)
  - 학대행위자가 보호자로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신고내용을) 미리 알리지 않음
    - ※ 어린이집 원장 또는 유치원 원장 명의로 신고 가능
    - ※ 신고자는 신고 시 피해 영유아 보호와 비밀보장을 위해 조사 시간, 장소, 출입통로 등 요청사항을 고지하거나 협의할 수 있음
- 응급상황 시 아동의 안전 및 보호
  - 교사는 응급상황 및 학대(의심)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도착 전까지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방안 마련
  - 아동학대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분리하는 것이 우선
  - 어린이집 원장 → 지자체 보고
  - 유치원 원장 → 교육(지원)청 보고
  - 피해 영유아 보호를 위한 긴급대책 마련 및 사안보고
  - 보고 과정에서 최소한의 필수 관계자 외에 피해 영유아 및 신고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
    - ※ 사안에 따라 처리 순서는 다를 수 있음

현장  
출동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의 현장출동 및 조사 시 피해 영유아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독립적인 공간 제공 등 협조
- 아동학대(의심) 사안 조사 시 담임교사 등은 필수면담 대상자에 해당
- 사안 조사 시 피해 유아가 원하거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나 유아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교사가 동석 가능(단, 진술 개입 금지)

사후  
조치

- 사후지원, 사례관리 및 서비스 협조

- 조치 :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임시)보호조치, (임시)보호명령, 피해아동보호명령, 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 피해 영유아에 대한 지속적 경과 관찰 및 다각적 지원방안 마련



최초 신고·보고 후 변동사항 발생 시 지자체(어린이집) 또는 교육(지원)청(유치원)에 수시 보고

02

# 아동학대 사안처리 흐름도



## 단계별 대응절차

### 신고 접수

- ▶ 신고접수
  - 전화 : 112(경찰), 시군구 긴급전화(아동학대전담공무원)
  - - 방문 : 시·도, 시·군·구, 관할 경찰서
  -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됨



### 조사

- ▶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현장출동
  - 피해 영유아, 학대행위(의심)자 조사 및 증거 수집
  - 관계인 조사
  - 진술 불일치 시 주변인 조사 등
- ▶ 지자체의 아동학대 여부 사례판단
- ▶ 경찰의 아동학대 수사
  - ※ 집단시설 내 아동학대 신고 사안의 경우 지자체는 집단시설 관할 행정기관으로 사례판단 결과 통보



## 어린이집·유치원의 역할

### 역할

- ▶ 아동학대 신고
  - 학대(의심)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신고내용을 알리지 않도록 주의
  - 학대(의심)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도착 전까지 아동의 안전한 보호방안 강구
  - 증거 필요시 확보

- ▶ (어린이집) 어린이집 원장 및 지자체 보고
- ▶ (유치원) 유치원장 및 교육(지원)청 보고

교원 대상 아동학대범죄 신고 사안의 경우 교육감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역할

- ▶ 피해 영유아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협조
  - 사전에 장소, 시간 등 협의 필수
  - 상담 장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 진술이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
  - ※ 신고자, 피해 영유아, 가해행위(의심)자, 사안 관련 비밀엄수
- ▶ 관련 자료의 제공
- ▶ 담임교사 등 필수 면담자 협조
- ▶ (어린이집-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사례판단 결과를 어린이집 원장과 공유, 피해 영유아 보호를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긴급복지 및 교육 지원방안 안내 등) 마련
- ▶ (유치원-교육(지원)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사례판단 결과를 유치원장과 공유, 피해 영유아 보호를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교육복지 및 교육 지원방안 안내 등) 마련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조치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1) 응급조치	(1) 긴급임시조치
<b>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실시</b> ▶ 학대행위자에 대한 제지 및 격리 ▶ 피해 영유아를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으로 인도	<b>경찰 실시</b> ▶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2) 일시보호조치, 보호조치	(2) 임시조치
<b>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실시</b> ▶ (일시보호조치)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일시보호 ▶ (보호조치) 학대피해 영유아 등 보호대상아동을 사례결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담 지도, 친인척 보호,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전문치료기관에 입원 또는 입소, 입양	<b>경찰신청-&gt;검사청구 -&gt;판사결정</b> ▶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친권·후견인 권한 행사 제한 정지 ▶ 상담 및 교육 위탁 ▶ 의료기관, 요양시설 위탁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사법처리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가정법원의 피해아동 보호명령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의 판단																
▶ 퇴거 등 격리 ▶ 접근 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위탁 ▶ 의료기관으로 치료위탁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상담·치료위탁 ▶ 가정위탁 ▶ 친권·후견인 권한 행사 제한 정지 ※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임시보호명령 가능	▶ 경찰: 수사 후 사건 송치 ▶ 검찰: 결정 전 조사 후 처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경찰</th> <th style="width: 15%;">검찰</th> <th style="width: 15%;"></th> <th style="width: 55%;">법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수사 후 사건 송치</td> <td>공소제기</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형사법원/ 형사판결</td> </tr> <tr> <td>아동보호 사건 송치</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가정법원/ 보호처분</td> </tr> <tr> <td>조건부 기소유예</td> <td></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종결</td> </tr> <tr> <td>불기소</td> <td></td> </tr> </tbody> </table>	경찰	검찰		법원	수사 후 사건 송치	공소제기	→	형사법원/ 형사판결	아동보호 사건 송치	→	가정법원/ 보호처분	조건부 기소유예		종결	불기소	
경찰	검찰		법원														
수사 후 사건 송치	공소제기	→	형사법원/ 형사판결														
	아동보호 사건 송치	→	가정법원/ 보호처분														
	조건부 기소유예		종결														
	불기소																



역할

- ▶ 피해 영유아 학적(생활기록 등) 처리
  - 출석인정
  - 경찰 수사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조사에 적극 협조
  - 모든 과정은 철저한 비밀 유지
  - 언론의 정보요청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배하지 않도록 주의
- ▶ 경찰 수사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조사에 적극 협조
  - ※ 피해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아동학대 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제3항

사례관리(지속관리)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아동보호전문기관 실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실시
▶ 상담 및 의료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 보호처분 이행 (아동보호전문기관에의 상담 위탁 등) ▶ 임시조치 등의 결과 상담 ▶ 심리치료, 가정지원 등

역할

- ▶ 피해 영유아를 대할 때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태도 유지
- ▶ 아동의 심리나 재학대 여부 세심하게 관찰 (필요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공유)
- ▶ 재학대 발생 시 112 신고
- ▶ 필요시 지자체 통합사례회의 참석
- ▶ 최초 신고·보고 후 변동사항 발생 시 지자체(어린이집) 또는 교육(지원)청(유치원)에 즉시 보고
- ▶ 필요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상담 등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내 적절한 장소 제공 협조

## 03

## 아동학대 신고



## 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 실제

## 1)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제도

## ◎ 아동학대 신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과태료는 기관 단위가 아닌 사람 단위로 부과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 2)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 아동을 보호하거나 관리, 교육하는 직무 종사자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 영유아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

- 아동에 대한 폭력·유기 등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
-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 면담을 거절하여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 아동이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아 소재 불명인 경우
- 출석 확인이 되지 않거나 이유 없이 2일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보호자 연락, 영상통화, 가정방문 등으로 아동학대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등 아동 보호가 응급한 경우
- 가정폭력 사안 발생으로 아동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 기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 3) 아동학대 신고에 필요한 내용

### ❖ 피해(의심)아동의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추정 연령,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 학대행위(의심)자의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추정 연령,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아동과의 동거 여부, 학대행위(의심)자의 특성 및 성향

### ❖ 피해(의심)아동의 상황

- 안전 여부, 응급조치 필요 여부, 심신 상태, 가정 상황 등

### ❖ 기타 사항

- 추가 아동 존재 여부(집단 내 다른 아동 또는 아동의 형제·자매 존재 여부), 아동학대행위(의심)자의 현재 상황(심신 상태 등)

※ 아동학대 신고 시 신고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근거하여 아동의 인적사항, 학대행위(의심)자의 인적사항, 피해(의심)아동의 상황, 기타상황 등 제공할 수 있으며 학대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도 신고할 수 있음

※ 신고자가 아동학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님.

- 「아동복지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조사 업무 등의 수행을 위하여 아동학대 관련 자료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불가피한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는 “법 제15조제1항제2호(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와 제3호(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 4) 아동학대 신고 방법

- 전화 : 112(경찰), 시군구 긴급전화(아동학대전담공무원)
- 방문 : 시·도, 시·군·구, 관할 경찰서

##### 참고 신고 전화 (예시)

1. 00어린이집/유치원에서 아동학대(의심) 사안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2. 00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중인 아동이 아동학대를 당한 것 같아 신고합니다.
  3. 아동의 현재 상황은 …… 합니다.
    - 아동의 안전 여부, 응급조치 필요 여부, 아동의 심신 상태, 가정 상황 등
  4. 아동의 인적 상황은 ……입니다.
    - 이름, 성별, 연령, 주소, 연락처 등
  5.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은 ……입니다.
    - 이름, 성별, 나이, 연락처 등 / 단, 학대행위자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 가능
  6. 그 외 당부사항은 ……입니다. (신고자 요청 사항 활용)
    -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동행출동 당부
    - 추후 연락이 필요한 경우 통화 가능한 번호 제공(어린이집/유치원 대표 전화번호 등)
- ※ 신고자는 신고 시 피해 영유아 보호와 비밀보장 등을 위해 조사 시간, 장소, 출입통로 등에 대하여 요청하거나 협의할 수 있음

※ 참고) 아동학대 관련 제도·절차문의 등 상담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5) 아동학대 신고 시 주의사항

### ❖ 아동학대 최초 인지 시 즉시 신고

- 신고 지체 시 피해 영유아의 위험 증가, 증거 멸실, 진술의 신빙성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 응급상황 시 아동의 안전 및 보호

- 아동학대행위자에 의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오기 전까지 기관 차원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방안 강구

### ❖ 학대(의심)행위자에게 신고내용을 미리 알리지 않기

- 학대행위자가 보호자일 수도 있으므로 신고내용을 보호자에게 미리 알리는 등의 행위로 아동학대 증거가 조작 또는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

### ❖ 가능한 한 증거 사진, 동영상 등을 확보

-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몸을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하지 않음

### ❖ 큰일이 난 것처럼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아동을 대함

- 피해 영유아가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평소와 다름없이 대하도록 노력

### ❖ 현장조사 전에 피해 영유아에게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도록 주의

- 피해 영유아가 계속된 질문으로 기억에 혼동이 생길 수 있음

### ❖ 신고 후에도 수사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적극 협력

- 피해 영유아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

### ❖ 피해 영유아에 대한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 어린이집, 유치원 내 업무담당자와 관리자 등 정보 공유를 최소화하도록 함

### ❖ 아동학대로 사망 사건 발생 시 나머지 영유아에 대한 트라우마 상담, 치료 고려

-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진행

### 참고 아동학대범죄 신고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예

- 담임교사가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도 확실한 판단이 들지 않아 동료 교사 또는 부장(주임)교사에게만 알리고, 이후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원장에게 보고만 하고, 수사기관 또는 시·도, 시·군·구(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신고 하지 않은 경우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관련 문의나 상담만 하고, 수사기관 또는 시·도, 시·군·구(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신고 하지 않은 경우
- 112에 전화하여 신고하였으나,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제보 한 경우

## 나.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신고자 보호

### 1)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비공개 의무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됨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

신고자에 대한 비밀엄수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아동학대처벌법」 제62조 제2항

### 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한 신고자 보호조치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3

- 신고 관련 조서나 그 밖의 서류 작성 시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생략 가능
-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됨
- 신고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영상물로 촬영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
- 법원은 증인 신문 시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거나 비공개로 진행 가능
- 법원은 공판기일 지정이나 그 밖의 소송 진행에 필요한 사항 협의 가능
-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신변안전 조치 가능

- ①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 ②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 ③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 귀가 시 동행
- ④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 ⑤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3) 아동학대범죄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2

### 4)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 아동학대범죄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
-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등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 가능
-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제15조)

#### 참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엄수의무 위반 사례

- SNS 등에서 신고자나 그 가족의 신원에 대해 알리거나 유포하는 경우
- 학대(의심)행위자 등이 어린이집, 유치원에 연락하여 신고자를 특정하여 문의하자 기관에서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려준 경우
- 신고자 이름을 명기 또는 추정할 수 있도록 사안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문서 비공개 및 열람 불가 처리를 하지 않아 공개 또는 유포되는 경우 <양식 2> <양식 2-1>
- 언론보도를 통해 사진이나 목소리를 그대로 방영함으로써 신고자가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게 한 경우
- 언론 보도에서 피해자 또는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밝힘으로써 신고자를 추정할 수 있게 한 경우

**참고** 신고 노출 사례**영유아의 학대 피해 사실이 보호자들에게 노출된 사례 1**

- 어린이집에서 7세 유아의 학대피해 정황을 파악한 후 신고하였고 경찰 및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조사를 위해 어린이집에 출동함. 현관에서 담임교사가 피해유아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교무실로 안내하였고, 등원 중이던 다른 보호자가 옆에 있던 다른 교사에게 무슨 일인지 묻는 과정에서 학대 신고 사실이 드러남. 이후 보호자들 사이에 소문이 나서 보호자들이 'OO이는 불쌍한 친구니까 도와주어야 한다', 'OO이 부모는 나쁜 사람이다', 'OO이와 놀지 말라'며 친구 관계를 제한하는 등 또래 친구들에게 영향을 줌. 이후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동네에서 살 수가 없다면서 이사를 하고 학대 피해유아의 퇴소로 이어짐

**영유아의 학대피해사실이 보호자들에게 노출된 사례 2**

- 유치원에서 5세 유아의 학대피해 정황을 파악한 후 해당 담임교사가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유아에 대한 정보가 다른 학년 교사 및 타유치원 교사까지 노출되어 신고자가 자신의 신고 사실이 알려질까봐 두려워하는 상황이 발생함

**참고**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민원 발생 시 대처 방안

- 교원이 아동학대(의심) 사안 신고 시,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고 신고와 관련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함
- 원장은 아동학대 신고 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민원처리 책임자로서 적극 대처하고 신고자인 교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함
  - \* 「유아교육법」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 \* 「영유아보육법」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고 영유아를 보육한다
- 학대 행위자 등이 신고자를 특정하여 문의하더라도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신고자 역시 자신이 신고했다고 밝힐 필요가 없음
- 기관장 명의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시 신고자의 이름 등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하거나, 필요시 경찰서에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참고 아동학대 신고를 한 교직원이 교육(보육)활동 침해를 당하는 경우 보호방안

-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3(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보육교직원이 보육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기준 마련 및 예방,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관리 및 보육교직원의 보호조치, 보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육 활동 보호 관련 법률, 노무 및 심리·정서 관련 상담,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4(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 교사가 보육활동침해를 당한 경우, 원장은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회의를 거쳐 보육교직원 보호조치 등 필요한 대응을 논의할 수 있음
- 「교원지위법」 제20조에 따른 보호조치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알게 된 학교장은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역교원보호위원회는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되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음
    - ※ 보호조치 :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원 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
- 「교원지위법」 제22조 (교원보호공제사업)
  - 수업, 상담, 지도감독 등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문제가 제기된 경우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나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형사건(「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제6호의 금지행위로 피소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보험회사로 사고접수하여 확인이 필요함
- 「교원지위법」 제29조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
  -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 04

**현장출동 및 조사****가. 현장출동 및 사안 조사****1) 아동학대범죄 현장출동**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복지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지체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없이 학대(의심)발생 현장에 출동

**2) 아동학대 사안 조사**

②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의 보호

2. 「아동복지법」 제22조의4의 사례관리계획에 따른 사례관리

⑤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신고현장 또는 피해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출입하여 피해 영유아와 아동학대행위자를 분리하여 조사 실시
  - 아동의 평소 생활이나 특이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나 담임교사 등이 조사 또는 면담 대상에 포함



- ※ 면밀한 조사 이후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사례판단(지자체)과 혐의 판단(수사기관)이 이루어짐
- ※ 집단시설 내 아동학대 신고 사안의 경우 지자체는 조사완료 및 사례판단 후 해당 집단시설 관할 행정기관에 결과(집단시설명, 사례판단근거 및 결과 등)를 공문으로 통보하고 추후 개입 방향을 협의함
- ※ (경찰) 교원 대상 아동학대범죄 신고 사안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사 및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이를 참고하여야 함
- ※ (지자체) 교원 대상 아동학대범죄 신고 사안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이를 참고하여야 함

- **(어린이집·유치원)** 아동학대 사안 조사(상담) 시, 피해 영유아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기관 내 장소를 제공하고 피해 영유아에 대한 관련 자료 등 적극 협조
  - 수사기관 혹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상담시간 및 장소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 상담 장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미상의 성인 집단 방문으로 인해 또래 집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함
  -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위탁기관을 보호자로 인정하고 적극 협조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회복지원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협력
  - (필요한 경우) 피해 영유아 조사 시 피해 영유아가 원하거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담임교사가 동석할 수 있음(단, 진술 개입 금지)



- ※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의심) 사안 조사 시 담임교사 등이 필수면담 대상으로 포함됨(관계부처 합동 '20.7월)
-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 영유아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의2



### 어린이집의 협조가 잘 된 사례

- 어린이집 생일날 초등학교 형이 아버지에게 맞지 않는 것이라고 소원을 빌고, 7세인 유아도 설명할 수 없는 상처가 난 상태로 등원하는 날이 많아 교사가 112에 신고하였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관이 어린이집으로 출동함. 잦은 신체 및 정서학대로 인해 분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였으나, 유아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울음을 터트리는 등 처음 만나는 조사자를 완강히 거부하며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불안해함. 이에 애착이 형성된 담임교사, 매일 등하원을 도와주었던 초등학교 형이 동석하여 함께 대화를 시작하였으며 최종 분리 보호에 동의하여 형제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음



### 유치원의 협조가 잘 된 사례

- 가정 내 학대가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교사에 의해 112 신고되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학대예방 경찰관이 유치원으로 현장출동함. 심각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로 불안한 정서가 있음에도 유아가 가정에서 분리되는 것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여 지자체에서는 유치원 교사와 긴밀하게 연락하며 유아가 유치원에 잘 다니고 있는지, 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등을 모니터링하여 가정의 학대 상황으로부터 유아를 보호하고 사례관리함

## 나. 사안보고 시 주의사항

### ❖ 보고 과정에서 피해 영유아 및 신고자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

- 최소한의 필수 관계자 외 정보 공유나 노출 금지 <양식 2> <양식2-1>

### ❖ 사안 관련 공문작성 시 주의

- 대국민 공개 여부 : 비공개
- 공개제한근거: 6호(개인정보)
- 직원열람제한: 영구
- 기타보안: 열람 시 암호 확인



### TIP! 아동학대 사안 발생 시 언론 대응후

- 아동학대 신고사례에 대해 언론 인터뷰 요청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응해서는 안 되며, 피해 영유아 개인 정보 및 신고인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 보도는 위법임
- 언론보도로 신고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 창구를 관리자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
- 어린이집 관리자 등은 지자체 담당 부서와의 협의 및 자문을 통해 언론 대응
- 유치원 관리자 등은 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와의 협의 및 자문을 통해 언론 대응

### 참고 교사가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 어린이집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의 관련 지침에 따르거나 가용 자원이 있을 경우, 신고당한 보육교직원에게 휴가를 주거나 다른 업무를 배정함으로써 이들이 영유아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관리 할 수 있음
- [대체교사 지원] 긴급사유(아동학대로 인한 긴급지원, 모성보호 등)

•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아동'에게 발생한 사고로 선생님들이 수사기관(경찰·검찰)에 신고됨으로써, 형사절차(경찰·검찰수사, 재판)가 개시될 때,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보장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험 형사방어비용 특약 내용 참고



### 참고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① 교육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참고** 교사가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 유치원

- 교사가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원장은 교육(지원)청 아동학대 및 교원 업무 담당자와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대응(교사 면담, 동선 구분, 수업 교체, 담임 교체 등)을 할 수 있음
- 이때 원장은 피해 영유아의 보호, 사안의 경중, 2차 피해 예방, 피해 영유아의 및 그 보호자의 의사, 타 영유아의 학습권 및 목격자 진술,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 등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교권 보호 관련 시도교육청별 세부 지침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대응
- 다른 영유아들의 피해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전체 학부모 안내 또는 소집을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개인정보동의를 받은 후 조사 진행
- 유치원과 교육(지원)청은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 대응 주관기관 및 교육전문가,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지자체 정보연계협의체 등을 통해 기관 간 협조 요청 가능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교육감은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직위해제 처분이 제한됨

**참고법령**

「유아교육법」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 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직위해제) ① 제4호 마목.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교원지위법」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③ 교원이 「아동학대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원지위법」 제17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05

##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조치

\* 해당파트의 피해아동은 피해영유아를 의미함



### 가. 피해아동 조치

#### 1)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1항

- **(경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 이외의 장소라도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는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의 응급조치가 가능

- 1호.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 2호.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 등으로부터 격리
- 3호. 피해아동 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 4호.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 상담을 통하여 학대피해사실이 인지되었고 피해 영유아 등이 가정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재학대의 위험이 현저한 경우 피해 영유아 등을 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안전을 신속히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면 응급조치 실시 가능



※ 제2호~제4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음. 다만,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검사가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연장됨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3항, 제4항

※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피해아동 등을 분리·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없이 피해아동 등을 인도받은 보호시설·의료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함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2항

## 2)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15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1호.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 2호. 「민법」 제77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 3호.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 4호.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 5호. 성폭력·아동학대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 6호.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 제3호~제6호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일시보호조치 가능

### 3) 피해아동에 대한 즉각분리제도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 중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등 피해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 결정 시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아동을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위탁 하는 제도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대상아동에게 일시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 4) 피해 영유아 학적(출결)처리

#### ◎ 피해 영유아의 출석 처리-어린이집

- 피해 영유아가 시설 입소나 학대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으로 어린이집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별도의 보고 절차 없이 지자체가 시스템상 등록된 정보를 통해 확인·관리
-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부터 공문(출결에 대한 학적처리 요청)을 받아 출석인정 처리



- (출석인정 특례) 아래와 같은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인정기준 : 주변환경 관련)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출처 : 2024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 ◎ 피해 영유아의 출석 처리-유치원

- 피해 영유아가 시설 입소나 학대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으로 유치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부터 공문(출결에 대한 학적처리 요청)을 받아 출석인정 처리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 고시 2023-4호)  
 제8조(출결상황) ① 유치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의 관리는 별표2와 같다.  
 - [별표 2] (출결상황 관리) 2. 결석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아동학대행위자 조치

### 1)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 **(판사)**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제1항

- 1호.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2호.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3호.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4호.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5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への 상담 및 교육 위탁
- 6호.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 7호.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 각 호의 임시조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필요한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음
- ※ 아동학대범죄 재발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제1호~제3호까지 긴급임시조치 가능

## 2) 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 **(사법경찰관)** 사법경찰관은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19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 등,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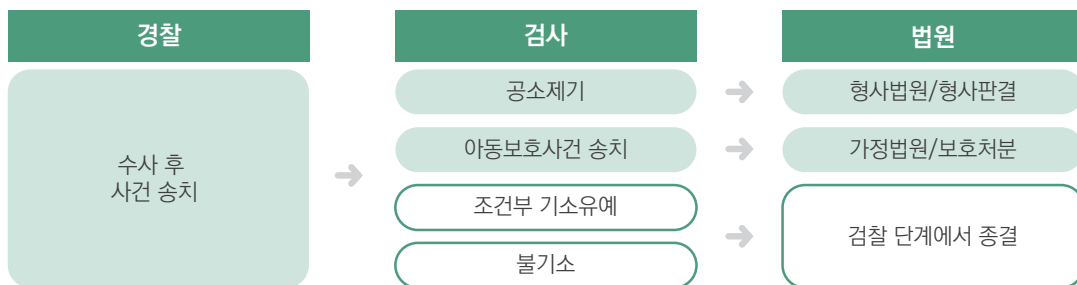


06

## 사법처리 주요내용



### 가.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



- **(경찰)**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
- **(검사)** 학대행위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 가능

- 불기소 결정: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종결(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등)
- 조건부 기소유예: 상담, 치료 또는 교육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
- 아동보호사건 송치: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 형사사법절차가 아닌 가정법원에서 원가정 회복을 위한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법원으로 송치
- 공소제기(기소): 일반범죄와 동일하게 처벌(징역, 벌금 등)

#### 보호처분의 종류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 제1항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 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 ■ (판사)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임시로 제4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52조

- 1호.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3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4호.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 5호.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 5호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
- 6호.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 7호.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8호.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 9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 피해아동보호명령이란

-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아동의 실효적인 보호와 학대행위자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가정법원에 요청하는 제도
- 제1호~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까지로 함
- 판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임시로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음

## 07

## 아동학대 관련 교육·보육활동 보호방안



## 가. 아동학대 관련 유치원의 교육활동 보호방안

## 1)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 교원 대상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아동학대 관련법에 따른 조사·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정당한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 판단 여부를 담은 교육감의견서 제출



## 「유아교육법」

-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 「교원지위법」

- 제17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아동학대처벌법」

- 제11조의2(조사)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아동복지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3(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에서의 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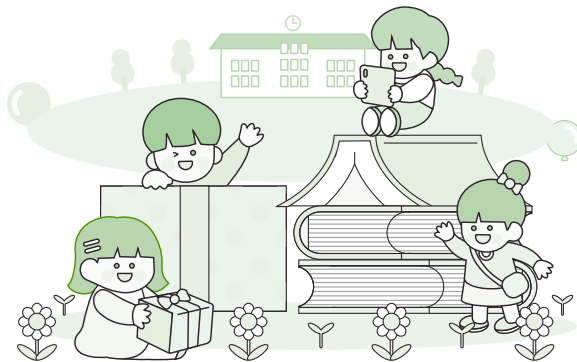
- ① 사법경찰관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 수사 및 제24조 후단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때 참고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제1항과 같은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할 때 사건기록에 편철된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 2) 교원(피신고자)의 진술 청취

- 교원이 아동학대 피신고자이면서 신고사항이 교육지원청으로 통보된 사건인 경우, 사안 조사 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상호 조율하여 가급적 피신고자의 진술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피신고자(교원)의 진술 청취



같은 날짜에 동일 장소에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연속하여 교대로 진술 청취  
(장소 등 구체적 방식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



## 나. 아동학대 관련 어린이집 보육활동 보호방안

### 1) 시·도 보육활동보호위원회

- 교사가 보육활동침해를 당한 경우, 원장은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회의를 거쳐 보육교직원 보호조치 등 필요한 대응을 논의할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4(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 위원회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둔다.

1.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2. 제2항에 따른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하여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보육 활동 침해에 대한 보호조치
2.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제18조의5(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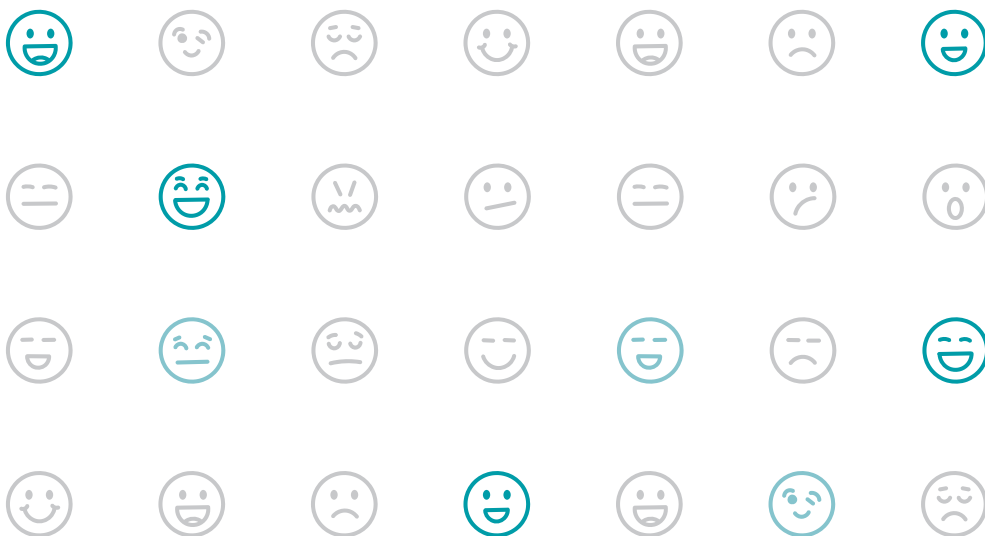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2(영유아 생활지도) 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법 제18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영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 학업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영유아의 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024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어린이집 유치원 가이드북



# IV

## 피해 영유아 소통과 통합지원

1. 피해 영유아의 이해
2. 피해 영유아의 소통 및 대화하기
3. 피해 영유아 중심 맞춤형 통합지원
4. 피해 영유아 통합지원을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

## 01

## 피해 영유아의 이해



## 가. 아동학대의 후유증

- 생애 초기인 영유아기의 학대 피해는 건강·발달·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의 손상으로 성인기까지 후유증이 남을 수 있고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생활, 대인관계, 가정생활 및 부모 역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신체적 후유증

- ❖ 신체적 손상, 성장의 지연
- ❖ 신경전달체계 이상으로 인한 생리기능의 변화 등

## 심리적 후유증

- ❖ 지능 및 인지 기능의 손상
- ❖ 감정 조절 기능의 저하/이상, 자기 개념의 손상
- ❖ 기관 부적응, 애착 형성의 어려움, 지나친 공격성 및 사회성 위축, 자학적이거나 자기파괴적 행동, 정신병리 등

## 아동학대 후유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 학대 및 방임 발생 당시 아동의 연령, 발달 상황, 가정환경
- ❖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 등 학대의 유형
- ❖ 학대의 빈도, 기간, 정도
- ❖ 피해 영유아와 아동학대행위자와의 관계
- ❖ 학대 이후의 생활
- ❖ 아동의 기질, 성향
- ❖ 아동의 대처 능력이나 적응 능력
- ❖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지지
- ❖ 전문가들의 개입방식



## 02

**피해 영유아 소통 및 대화하기****가. 피해 영유아와 대화하기**

- 피해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달특성상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지하거나 보고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음
- 대화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으므로 교사의 관심과 면밀한 관찰 필요
- 피해 영유아를 어떻게 대화에 참여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그들의 긍정적 자원을 찾아 대화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

**교사가 유의해야 할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

- 상황 판단이 자기중심적이다
- 주의 집중 시간이 짧다
- 연령과 언어발달, 기질에 따라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 대신 행동이나 표정으로 표현할 때가 많다
- 애착관계를 형성한 보호자의 질문에 따라 답변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학대에 노출된 영유아가 나타내는 특성**

- 발달지연: 영유아기에 일관되고 풍부한 경험이 부족하면 동작, 언어, 사회, 인지 발달의 지연이 나타날 수 있음
- 섭식행동문제: 심각한 방임을 경험한 영유아는 음식을 감추거나 모으는 행동을 보일 수 있음
- 진정행동: 머리를 벽에 부딪치거나, 앞뒤로 흔들거나, 굶거나, 상처를 내는 등의 진정행동을 보이기도 함
- 정서문제: 학대에 노출된 영유아가 나타내는 정서문제의 범위는 매우 넓고 우울과 불안을 동반할 수 있음
- 부적절한 모델링 행동: 학대하는 성인을 모방한 행동, 성인의 성적인 행동에 대한 모방행동을 나타낼 수 있음
- 공격성: 학대에 노출된 영유아는 또래에게 공격적이거나 잔인한 행동을 나타낼 수 있음

### ◎ 긍정적으로 시작하기

-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이전에 잘 해냈던 경험 등에 대해 탐색하고 강화하는 접근이 도움 됨.  
이러한 대화는 영유아 스스로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기인식을 갖게 함

“

“무엇을 좋아하나요?” / “무엇을 하는 게 좋은가요?”

“무엇이 재미있나요?”

“재미있는 영상 또는 프로그램은 뭐가요? 거기서 누가 좋은가요? 왜 좋은가요?”

”

### ◎ 현재 상황에 대한 지각 탐색하기

“

“어린이집/유치원에서는 무엇이 좋은가요? /재미있나요?”

“어린이집/유치원 생활하면서 속상한 게 있나요?”

“집에서는 누구랑 노나요?”

“엄마(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 동생)랑 무엇을 할 때가 좋나요?”

“그러면 그때 OO이는 무엇을, 어떻게 하나요?”

“엄마(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윗형제, 동생)랑 무엇을 할 때 속상하나요?”

“그러면 그때 OO이는 무엇을, 어떻게 하나요?”

”

### ◎ 과거와 현재 상황에서 도움 되는 것 알아보기

“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나요?”

“그때는 어떻게 좋아지게 되었나요?”

“그때처럼 좋아지려면 누가 있어야 하나요?”

“누구랑 있는 것이 좋은가요?”

”

## ◎ 피해 영유아와 대화를 돕는 다양한 매체 활용

### ▪ 인형이나 손인형 이용하기

- 인형은 평상시 많이 가지고 노는 놀잇감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입하여 말하는데 도움 됨.  
교사는 영유아와 함께 손인형을 사용하여 질문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음



“여기 있는 인형(사람 인형, 동물 인형 등) 중에 어떤 것이 마음에 들어요?”

“이 아이(동물)는 요새 마음이 어때요?”

“이 아이(동물)는 힘이 없어 보이는데, 왜 그러나요?”



### ▪ 감정카드를 사용하여 대화하기

- 다양한 감정이 그림으로 표현된 감정카드를 활용하면 영유아의 마음 상태에 대해 풍부한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음. 언어적인 표현에서 제한이 되는 경우 그림으로만 표현된 감정들은 언어로 쓰인 단어에 의해 생각을 제한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 속에서의 감정들을 골라내고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여기에 여러 가지 표정들이 있는데, 지금 OO이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지 한 번 골라서 보여줄 수 있나요?”

“왜 이 카드를 골랐는지 이야기해줄 수 있나요?”

“이 카드의 그림과 OO이의 마음이 어떻게 같은지 이야기해줄 수 있나요?”

“어떨 때 이런 마음이 드나요?”

“최근에 이런 마음이 들었던 때가 언제였나요?”

“이 마음 대신에 어떤 마음이 생기면 좋겠나요?”

“이런 마음이 계속 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다양한 놀잇감으로 마음 상태와 변화를 탐색하기

- 영유아에게 익숙한 놀잇감을 이용하여 영유아의 현재 상태와 변화를 알아볼 수 있음



[영유아에게 익숙한 물건(색연필, 작은 블록 등)을 바닥에 많이 늘어두고]

“많이 힘들었다면 많이 잡고, 조금 힘들면 조금만 집어 보세요”

“언제 그렇게 많이 힘들었나요? 아팠나요?”

“○○이를 아프게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만약에 말하고 싶지 않다면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가 아프거나 힘들지 않게(기분이 좋아지게) 도와주고 싶어요”

“그 방법을 그 사람에게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참고** 피해 영유아와 대화 시 유의점

- ❖ 안심시키기 : 영유아가 부모(교사)에게 학대 상황을 이야기해도 벌을 받거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어 안심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함
- ❖ 질문은 간단히 : 영유아는 집중시간이 짧기 때문에 질문을 단시간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함. 우선적으로 학대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재차 질문하여 기억이 변형되지 않도록 유의함



**TIP!** 상담 시 유용한 TIP

- ❖ 영유아의 표현을 어른의 관점으로 생각하여 추측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영유아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모(교사)가 임의로 추측한 내용을 질문할 경우 유도 질문이 되거나 기억이 변형될 수 있음
- ❖ 부모(교사)가 놀라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 영유아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나 혼이 날까 봐 학대 상황에 대해 말을 하지 않으려 할 수 있음
- ❖ 대답을 강요하거나 다그칠 경우, 거짓된 대답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어야 함
- ❖ 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하여 질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전문가가 직접 영유아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함

## 나. 피해 영유아 보호자와 대화하기<sup>1</sup>

### ◎ 부모에 대해 교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

- 면담을 시작할 때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부모가 가지는 자녀에 대한 근본적인 바람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원만한 면담을 가능하게 함. 교사의 열린 태도가 부모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면담에 임하게 할 수 있음
- 자녀를 직접 가해하지 않는 보호자와 면담 시 책임감과 죄책감 등으로 힘들 수 있음을 이해하는 접근 필요

### ▣ 시작하기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OO(자녀)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 ▣ 원하는 미래 이야기하기



“이번 상황이 정리 또는 해결되면 OO이와의 사이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머님(아버님)은 어떤 상황을 희망하시나요?”



1 참고 : 노혜련, 허남순 역(2015). 해결을 위한 면접(4판). 학지사

### ▣ 긍정적 경험 알아보기



“OO이를 양육하면서 잘 지냈던 때는 언제였나요?”

“그때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나요?”

“그때 어머님(아버님)은 OO에게 어떻게 대하셨나요?”

“혹시 최근에 그것과 조금이라도 비슷했던 때는 언제였나요?”



### ▣ 이미 있는 강점 인정하기



“어떻게 이전과 다르게 OO에게 그런 좋은 말씀을 하실 수 있었나요?”

“OO이가 어머님(아버님)의 그런 마음을 알고 있을까요?”



### ▣ 효과 있는 것을 더하기



“지금처럼 지내는 데 도움이 되었거나 효과가 있었던 것들을 계속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 참고 학대피해 영유아의 보호자와 대화 시 유의사항

- ❖ 보호자가 교사와의 대화에 우호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함
- ❖ 판단을 중지하고 부모의 조심스러운 말과 행동 이면에 있는 감정을 공감함
- ❖ 보호자가 화가 나 있고 비판적인 경우라도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경청함
- ❖ 보호자가 사용하는 단어를 면담하는 동안 적절하게 사용함
- ❖ 보호자 면(상)담을 나눌 때 ‘학대’라는 단어 사용을 유의함
  - \* 위축되거나, 반대로 방어하고 대화가 단절될 수 있음
- ❖ 타 기관에서 들은 말을 전달하지 않음 : 상호 간의 신뢰감 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음
- ❖ 보호자를 비난하거나 지적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교육적 또는 지시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음

**참고** 이주배경(다문화) 아동 보호자 대상 대화 시 유의점

- ❖ 이주배경 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행정적 처리 과정은 국민인 아동과 다르지 않으며, 모든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될 수 있음 (「아동복지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근거)
- ❖ 피해 영유아 가정 형태에 대한 이해·배려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용어나 폄하하는 표현 주의  
예) “한국에선 이 정도는 교육 목적으로 해요”, “그 나라에선 애를 이렇게 때리면서 교육하나 보죠?”
- ❖ 이주배경 대상자들은 언어와 문화 차이 등으로 표현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으므로 통역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03

## 피해 영유아 중심 맞춤형 통합지원



### ◎ 피해 영유아 맞춤형 통합지원 적용 사례

#### 친부로부터 지속적인 신체 및 정서학대로 신고된 사례

- ❖ 친부는 감정기복이 심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화를 내며, 친모는 산후 우울증으로 표정이 거의 없고 교사와의 언어적 소통도 피하는 상황임. 현재 친모가 양육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 ❖ 피해 영유아는 또래보다 체구가 작고 눈맞춤이 잘되지 않으며, 놀이에 집중하지 못하고 공격적이거나 무기력한 모습이 자주 관찰됨
- ❖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체를 확인한 결과, 등에 성인 손바닥 크기의 멍을 발견함. 형과 싸웠기 때문에 벌을 주는 거라며 아빠가 아프게 때렸다고 이야기함
- ❖ 담임교사는 원장에게 보고하고 친모와 면담 후 112에 아동학대로 신고함

### ◎ 안전·보호 지원

기관	지원내용
어린이집 유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 후 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방문 전까지 피해 영유아를 원가정으로 복귀시키지 않으며 안전 확보</li> <li>• 조사 시 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기관내 장소를 협조하고 피해 영유아에게 의사를 물은 뒤 욕구에 따라 조사 시 담임교사가 동석하여 안정적인 환경 지원</li> <li>• 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평소 아동에게 관찰되었던 학대피해 징후 등 관련 정보 및 상처 사진 등 정보 제공</li> </ul>
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 사안처리 지원 및 관리</li> <li>•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조사 시 운영 관련 서류 및 전수조사 진행 등 진행 협조</li> <li>• 신고 이후 지자체 주관 정보연계협의체 참석을 통해 유관기관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대상 업무협조 필요사항 검토 및 지원</li> </ul>

기관	지원내용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대행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친모에게 학대피해아동 쉼터, 일시보호시설, 가정위탁 및 일시 보호조치 등 안내 및 연계</li> </ul>
학대피해아동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 영유아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 및 숙식 지원</li> <li>피해 영유아가 머무는 동안 생활, 교육, 정서지원 등을 하며 필요시 건강검진 및 병원 치료 연계</li> </ul>

### ◎ 심리·정서 지원

기관	지원내용
아동보호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 영유아 대상 내방 및 방문하여 현재 피해 영유아의 안전을 확인하고 회복을 위해 필요한 상담, 교육, 치료 서비스 지원</li> </ul>
정신건강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후우울증이 있는 친모에게 약물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li> </ul>

### ◎ 일상회복(교육)지원

기관	지원내용
아린이집유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 영유아가 상담·치료 등을 위해 출석하지 못한 기간 동안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li> <li>놀이와 일과에서 치유와 회복을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li> <li>혼란스러운 경험을 한 영유아에게 안정적 환경을 제공하고 적절한 기대를 설정</li> <li>영유아가 자신을 돌봐주는 신뢰할 만한 성인과 의미있는 관계를 맺도록 지원</li> </ul>
지역사회유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을 연계하여 멘토링, 교육, 돌봄, 지역사회 자원 등 연계</li> </ul>

### ◎ 재학대방지 지원

기관	지원내용
어린이집 유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학대 의심 상황을 수시 모니터링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모니터링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li> <li>• 재학대 예방을 위한 정기면담, 보호자 및 심리검사, 부모교육 등 진행</li> </ul>
아동보호 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적으로 피해 영유아 및 보호자 대상 모니터링 등 사례관리 진행</li> <li>• 원가정의 양육환경 점검 및 가정복귀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가정 복귀 조력</li> <li>• 가정 복귀 이후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재학대 여부 및 지속적 보호방안 마련</li> </ul>

### ◎ 기타지원

기관	지원내용
가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사회복지·정신건강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해 보호자 대상 양육기술강화 /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지원</li> </ul>
의료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지역 전담의료기관 및 연계 병원을 통해 피해 영유아의 신체적, 정신적 외상 치료 및 검사 지원</li> <li>• 아동을 진료 후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을 통해 신속한 아동학대 판단조력</li> </ul>
법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술조력인제도 : 피해아동이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의사소통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 지원</li> <li>•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을 위하여 아동보호사건 또는 형사재판의 종결 시까지 피해아동을 조력함.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li> <li>• 필요시 변호사 연계를 통한 전문 법률 자문 및 관련 상담을 연계</li> <li>• 민·형사 등 소송 진행시 법률구조 및 변호, 소송대리 관련 정보 제공</li> </ul>



04

## 피해 영유아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



### ◎ 아동학대 관련 전문기관

기관	역할
<b>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본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li> <li>•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li> <li>•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li> <li>•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li> <li>•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li> <li>•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지원</li> </ul>
<b>아동보호전문기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 영유아, 피해 영유아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 위한 상담·치료 교육</li> <li>•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아동정보시스템 정보입력에 필요한 자료 제공</li> <li>• 아동학대예방·피해 영유아보호와 관련된 기관간의 연계</li> <li>• 피해 영유아 및 피해 영유아 가정의 기능 회복서비스 제공</li> <li>• 사례관리 계획수립 및 서비스 제공</li> <li>• 가정복귀 프로그램 등 가정복귀절차 실시, 사후관리</li> <li>• 법원의 상담위탁 명령 수행</li> </ul>
<b>장애인권익옹호기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학대(장애아동 포함)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li> <li>• 피해장애인과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li> <li>•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li> <li>• 장애인 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li> <li>•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 체계의 구축 및 교류</li> </ul>

### ◎ 사회복지 및 정신건강 관련기관

기관	역할
<b>육아종합지원센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보육교직원·부모상담 등을 제공하고, 전문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및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li> </ul>
<b>종합사회복지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복지사업(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조직 및 자활사업 등) 실시</li> </ul>
<b>지역아동센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 교육, 놀이, 지역사회연계 등 복지서비스 제공</li> </ul>

기관	역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가족생활 지원 위한 교육·상담, 한국어교육, 일자리 정보제공</li> <li>• 통역·번역 지원 등의 종합서비스 제공</li> </ul>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독자 및 가족 대상 알콜, 인터넷, 도박, 마약중독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li> </ul>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증진 도모</li> <li>• 자살 예방,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및 중증정신질환 관리</li> </ul>

### ◎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기관	역할
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 쉼터(비공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대로부터 아동을 응급, 즉각분리 조치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학대피해아동쉼터(일시보호시설) 운영</li> <li>•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학대 재발 위험이 크므로 현재 생활 중인 가정의 보호가 바람직하지 않은 18세 미만 피해아동 대상 지원</li> <li>•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등 생활, 교육, 정서 지원</li> <li>• 심리검사,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 치료 지원</li> <li>• 학대피해장애아동 쉼터 : 주7일 24시간 상시 운영, 긴급보호, 상담, 치료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li> </ul>
아동양육시설/그룹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 양육,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li> </ul>

### ◎ 상담 및 의료기관

기관	역할
해바라기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의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365일 24시간 상담지원, 의료지원, 법률·수사지원, 심리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li> </ul>
범죄피해자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피해자 및 가족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법률적, 경제적 지원 및 의료적 지원(정신과적 심리치료, 상해 치료비 지원),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교육 지원, 멘토링 봉사단 운영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 지원</li> </ul>
스마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불안장애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심리평가, 심리치료, 의학적 진단, 법률상담, 사회적 지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범죄 발생 후 보호가 필요하거나 본인의 집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피해자들에게 임시 주거가 가능한 쉼터 제공</li> </ul>
건강가정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가족지원, 상담 및 치료,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li> </ul>

기관	역할
광역/지역 전담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 영유아 신체적 정신적 외상 치료 및 검사</li> <li>신속 학대 판단(소견서/진단서)</li> </ul>
가정폭력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정서적 지원과 가정폭력 예방활동 지원</li> </ul>

### ◎ 법률 관련기관 및 제도

기관	역할
국선변호사 지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아동·법정대리인에게 국선변호사 선정 안내</li> <li>요청시 지방검찰청에 신청</li> </ul>
진술조력인 지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자가 진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통해 조사 시 의사소통 중개·보조(13세 미만·장애인 피해자 조사 시 의무적 고지)</li> </ul>
대한법률구조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법률상담이나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 관련 지원</li> </ul>

#### 참고 진술조력인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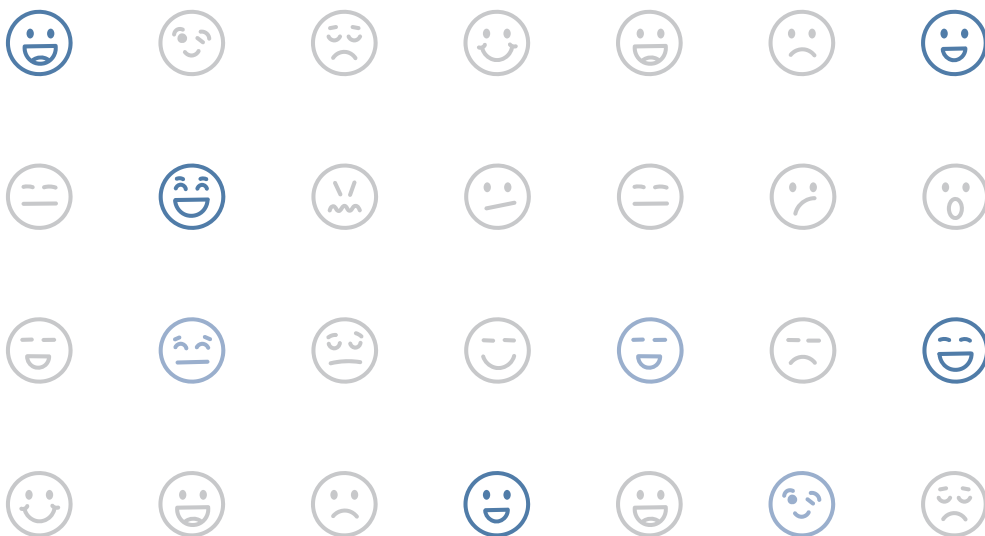
- 범죄 피해아동·장애인의 특별한 통역사인 진술조력인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임. 수사나 재판 과정이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기여함
-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참고인, 증인이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도 폭넓게 지원됨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구두나 서면으로 진술조력인 선정을 신청함. 단, 피해자의 특성, 심리상태, 장애 등을 미리 알려주면 피해자에게 보다 더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진술조력인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피해자에게 진술조력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선정 가능

#### 신청방법

- 신청권자: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
- 신청방법: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 2024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어린이집 유치원 가이드북



# V

## Q&A

### 1.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주요 Q&A

## 01

##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주요 Q&amp;A



## 가. 아동학대 발견 및 초기대응

Q1

부부싸움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아이가 긴장감과 위협감을 계속 느끼고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하나요?

A

정서학대는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합니다. 부모가 아동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았어도 부부싸움 및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아동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 등은 경우에 따라 정서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에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2

또래 간 갈등으로 인해 상대 부모에게 '너도 이렇게 하면 어때?'라며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한 경우는 일반 폭행인가요? 아동학대인가요?

A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및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이 발생했을 때 「아동복지법」과 「형법」중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는 수사기관의 판단 및 피해자가 어떤 죄명으로 고소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 아동학대 신고 및 신고의무

**Q1** 교사는 모든 아동학대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나요?

**A** 교사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입니다. 이때 신고의무는 모든 아동학대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업 중에 학생의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였거나, 학생 면담 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 등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을 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교사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이웃집 아동학대를 목격하였다면 신고할 수 있지만 신고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Q2**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의심사항도 신고사항인가요?

**A** 신고의무자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법률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교사 직군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교사는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자에 해당하므로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안 및 의심 사항도 신고사항에 해당합니다.

**Q3** 보호자가 교사의 아동학대행위를 호소하는 경우, 유치원/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보호자가 교사의 아동학대행위를 호소하거나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아동학대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Q4

신고의무자가 기관장에게 보고만 하고, 수사기관이나 시·군·군구 아동학대 긴급전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아동학대 신고로 인정되나요?

A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시·군·구 아동학대 긴급전화 (아동학대전담공무원)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5

피해아동이 신고철회를 요구합니다. 가능한가요?

A

아동학대 신고의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피해아동 및 신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현장출동 및 조사 등의 사안처리가 진행 됩니다. 교사에게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러한 신고를 통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다방면의 지원이 가능함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6

신고와 고소·고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신고’란 국민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 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보고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 제삼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고소, 고발과는 구별되며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아동의 안전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7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아동학대를 신고했을 때, 학대행위(의심)자로부터 어린이집/유치원 또는 신고자의 안전은 확보되는지요?

A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과 제62조에 따르면,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알려져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신고자 등이 직접 주거지나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경호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의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8

어린이집/유치원 지역의 관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신고를 하였으나 아동의 주민등록주소지가 관할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안의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아닌 집단시설 관할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조사·판단을 담당합니다. 조사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해당 지자체와 공동관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단, 단발성 이용 집단시설(수련회, 캠프 등) 제외)

Q9

아동학대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호자 민원이 제기되거나, 협박 등에 시달릴 경우에는 교사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아동학대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로서 법적으로 보호받고, 신고와 관련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 원장은 아동학대 신고 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민원처리 책임자로서 적극 대처하고 신고자인 교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Q10** ‘학대 위기 환경 우려 명단’을 공유받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는 학대 신고의무가 발생하나요?

**A** ‘학대 위기 환경 우려 명단\* 공유’는 미처 드러나지 않은 학대피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나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이며, 해당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것이 곧 학대 의심은 아닙니다. 따라서 명단을 공유받았다는 것만으로 신고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유된 아동을 면밀히 관찰하는 중에 학대 의심 정황 발견 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e-아동행복지원시스템)-교육청·어린이집 정보 연계 및 각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예측 결과

## 다. 아동학대 사안처리

**Q1** 아동학대(의심) 사안 조사 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나 면담을 요청하나요?

**A**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의심) 사안 조사 시 담임교사·상담교사 등이 필수면담 대상으로 포함됩니다(관계부처 합동 '20.7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 시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진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의2제1항)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학대행위자의 사실 은폐·진술 거부 등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워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피해사실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위해 피해 영유아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야기한 것인지, 평소 관찰되고 인지되었던 모습이나 태도 등을 통해 발생 요인, 위험 수준 등을 묻기 위해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나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2** 아동학대 조사와 판정은 누가 하나요?

**A** 아동학대 조사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지자체)과 수사기관(경찰)에서 진행합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여부에 대하여 조사와 수사를 진행한 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검사는 혐의의 인정 여부 및 사건의 성질·학대행위자의 개선 가능성·피해아동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결정, 조건부 기소유예, 아동보호사건 송치, 기소결정을 합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건과 기소결정이 된 건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한편, 지자체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를 진행한 후, 아동보호·지원, 재학대 예방 등 사례관리를 위한 복지적 관점에서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사례판단을 합니다.

**Q3**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조사’는 다른가요?

**A**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 영유아의 보호, 피해 영유아의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해 조사·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는 아동학대 혐의 유무를 밝히고 학대행위자를 처벌받게 하기 위한 것이며, 수사의 일환입니다.

**Q4** 아동학대(범죄)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지자체와 사법기관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사법기관은 범죄 혐의 존재 여부에 중점을 두고 사건의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반면, 지자체는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학대받은 아동을 신속하고 적극적인 발견으로 보호조치하며, 학대 후유증 최소화·가족기능 회복 등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로 판단하더라도 사법기관은 ‘아동학대 혐의없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Q5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니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A

출석이 의무는 아닙니다. 경찰이나 검사는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는데, 이를 참고인조사라고 합니다. 참고인조사는 임의적인 절차이므로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출석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동학대사건의 진실을 파악하여 피해 영유아 보호를 위해서는, 참고인인 교사의 진술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참석이 부담스러우면 직접 출석 대신에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방문조사, 전화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대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6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 보호자의 동의 없이 조사가 가능한가요?

A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학대피해 영유아의 형제자매도 학대피해 의심으로 상담이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요청 시 어린이집/유치원에서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형제자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Q7

아동학대 보호시설에서 아동학대 피해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결석한 경우 출결 상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출석인정과 관련해 지자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서 해당 기관에 출석인정을 위한 협조 공문을 보내면 출석을 인정하도록 하며 해당 기관에서는 피해 영유아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보육사업안내 출석인정 특례] /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참고

Q8

교사가 아동학대행위자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되나요?

A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아동관련기관(어린이집/유치원 등)에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 선고를 받지 않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등은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참고). 이외에도 징계절차에 따라 위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징계(파면, 해임)를 받을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8조 참고).

## 라.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Q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다른 것인가요?

A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시행하는 교육이고,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교육으로 근거법령,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교육으로 (기존) '22년까지 신고의무자이면서 동시에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대상인 경우도 연1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구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교육 대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 예시 :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 원장과 종사자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교육 내용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1.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3.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

**Q2****신고의무자 교육대상 중 종사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자원봉사자도 교육대상인가요?****A**

종사자란 ‘일정한 직업이나 부문, 일 따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종사자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다만, 휴직자는 제외),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 인원, 용역 직원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 당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은 실시하되 만약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상임이사의 경우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으며, 별도 소속을 가지고 있는 비상임이사는 교육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3****신고의무자 교육과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둘 다 실시 해야 하나요?****A**

신고의무자 교육만 실시하면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만, 「아동복지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 기관(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은 아닙니다. 또한, 2020년부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20.10.1 시행)으로 기존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에서 ‘장과 종사자’로 신고의무자 교육대상 범위가 변경되었으니 교육 시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4****타 기관에서 별도로 만든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해도 되나요?****A**

2021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 또는 별도 승인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진행한 교육만 인정됩니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자체 제작한 교육 자료(영상)가 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및 아동권리보장원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콘텐츠 인증 신청(공문) → 승인(공문)’ 절차를 통해 교육 콘텐츠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Q5

A 기관에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은 뒤, 몇 달 후에 B 기관으로 이직한 경우 해당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해당 종사자가 이전 기관(A)에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그 증빙자료를 변경된 근무지(B)의 기관장에게 제출할 경우, 변경된 근무지(B)의 기관장은 해당 종사자에 대한 신고의무자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마. 학적 및 행정처리

Q1

학대 예방 등을 위해 공유되는 e아동행복지원대상자에게 교육청·유치원·어린이집에서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사전 고지를 해야 하나요?

A

대상자의 질의가 있는 등의 경우 e아동행복지원사업의 목적(맞춤형 지원)이나 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본문 참조)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공유받는 것이므로 동법 제20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출처·내용 등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Q2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대상자로 발굴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

취학·출결, 어린이집·유치원 출결, 의료기관 진료,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 양육수당·보육료, 아동학대 사례 등 다양한 44종 예측 변수에 해당하는 대상아동 정보를 수집하여 대상자(고위험 아동)를 선정합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크고 작은 아동학대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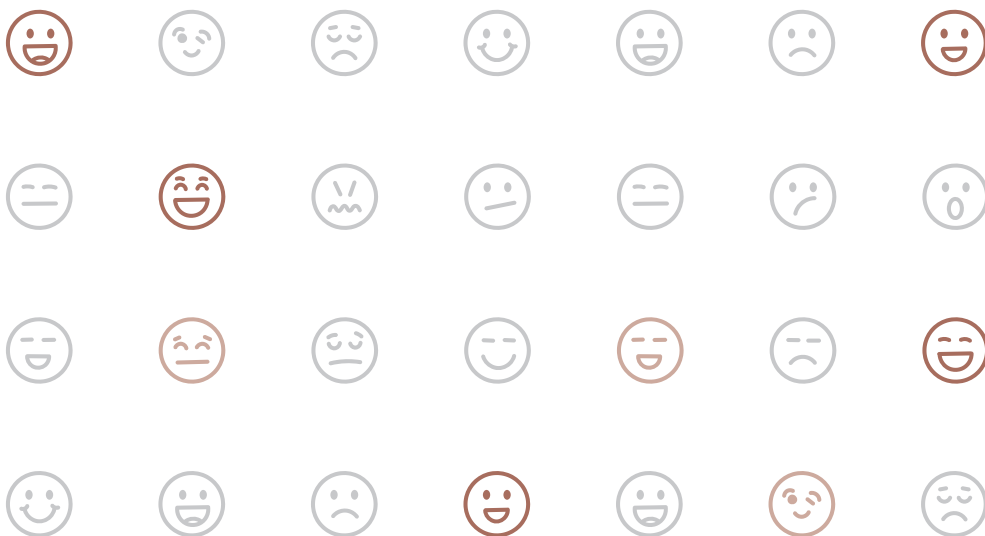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어린이집·유치원 가이드북



# 2024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어린이집·유치원 가이드북



# VI

## 부록

1. 각종 양식 (예시)
2. 유관기관 목록

## 1. 각종 양식 (예시)

양식 1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기관명	000어린이집 / 000유치원		
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	서울 종로구	기관장 성명	홍길동
교육일시	ex) 2024.5.1.	강사명(소속)	*집합 강사교육일 경우만 작성
총 인원수 *2024.00.00기준	100명	교육 수료인원	80명
교육시간	1시간	교육방법	(집합) 강사교육, (집합) 시청각교육, (인터넷) 복지부 위탁 기관, (인터넷) 기타 원격교육기관, 중 1개 이상 선택
* 교육방법 중 '(인터넷) 기타 원격교육기관'을 선택한 경우 추가 작성			
교육(탐재)운영 기관 명		탐재 사이트 주소	www.edu.or.kr
<b>&lt; 교육방법에 따른 증빙자료 목록(예시) &g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방식에 따라 아래 증빙자료를 1차 취합(관리·감독) 기관(시도, 시군구, 보건소,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에 제출</li> <li>※ (집합 교육) 강사 교육 또는 복지부가 제공·승인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합 강사교육) 강사 프로필(자격기준 자체검증), 교육 콘텐츠 자료(자체검증), 교육계획, 교육사진, 참석자 서명 첨부</li> <li>- (집합 시청각교육) 교육계획,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참석자 서명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부 제공(또는 복지부가 승인한) 콘텐츠 사용 필요</li> </ul> </li> <li>- (비대면 실시간 교육) 집합 시청각 교육의 증빙자료 예시를 참고하되, 비대면 실시간 교육 형태, 방법 등에 따라 1차 취합기관에서 별도 증빙요건 기준 설정 가능</li> </ul> </li> <li>※ (인터넷 강의) 보건복지부 위탁 기관 또는 복지부가 제공·승인한 콘텐츠를 탑재한 기타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부 위탁·운영 기관) (개인) 교육 수료증 취합 또는 (기관별 나라배움터 등) 기관 단위 교육 이수자 명단(엑셀파일 등) 제출</li> <li>- (복지부 제공·승인 콘텐츠를 탑재한 기타 원격교육 기관) 교육운영 기관 명, 콘텐츠 탑재 사이트 주소, 해당 교육 사이트에서 발행한 교육 이수증 등 제출</li> </ul> </li> </ul>			

## 양식 2

## 아동학대 사안보고 공문 (예시)

## (어린이집/유치원명)

수신자

(경유)

## 제 목 영유아 생활 관련 사안보고

- 1234(20○○.○○.○○)호의 관련입니다.
- 현재 본원에 재원 중인 영유아에게 아동학대 사안이 발생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피해 영유아 인적사항(생략가능)

학대피해 영유아			학대행위자		비고
기관명	반	성명	관계	성명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비밀 엄수 등의 의무) 제1항에 따른 비밀 누설 금지

나. 세부 내용 : (붙임1) 아동학대 사안보고서 참고

붙임 아동학대 사안보고서 1부. 끝.

## ○ ○ 어린이집/유치원장

담 당 ○○○

부장 ○○○

원감 ○○○

원장○○○

협조자

시 행 ○○○(20 . . . )

접 수 ( . . . )

우

/

전 화

/전송

/E-mail

/비공개(6)

양식 2-1

아동학대 사안보고서 (예시)

<b>보 고 구 분</b>	<input type="checkbox"/> 최초	<input type="checkbox"/> 최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어린이집/유치원
----------------------------	-----------------------------	-----------------------------	--

담임	성명:	부장	성명:	원감	성명:	원장	성명:
	H·P:	(책임교사)	H·P:		H·P:		H·P:

피해 영유아	( )반 성명 : ( )				
발생 일시	2000.00.00.~2000.00.00.(00회)	보고	최초	2000.00.00.	
접수 일시	2000.00.00.	일시	최종	2000.00.00.	

피해 사항 및 주요 내용	<p>※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서술</p> <p><b>㉠ 아동학대 신고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일 / 신고자 / 기관명 :</li> <li>■ 신고 접수일자 및 접수기관 :</li> <li>■ 신고내용 :</li> <li>■ 피해아동 : 총 0명(0세, '00.0.0. 퇴원/자퇴)</li> </ul> <p><b>㉡ 진행경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 소지 사례 정황 확인사항, 경찰 신고 및 조사 경과, 지자체 및 교육청 조치사항 등 진행경과를 일자별로 기재</li> </ul>
---------------------	--

특이사항	※ 재학대여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결과, 언론보도 및 경찰 신고 내용, 특수교육대상자 여부 등
------	--

보호조치 및 처벌 현황

대 상	조치 사항	조치 일자	조치 기관
피해 영유아	피해영유아 일시보호	2000.00.00.	○○시청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행위자	경찰조사 진행중	2000.00.00.	○○경찰서 등

향후 계획

예) ①상담 및 보호 조치로 인한 출석인정, ②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일자 및 대상 포함) 등
---

양식 3

**무단결석·미인정결석 아동 관리대장**

**무단결석·미인정결석 아동에 대한 조치 결과 관리대장\_ 기관 보관용**

※ 어린이집·유치원에서는 매일 무단결석·미인정결석 아동의 현황을 관리하고 자체 보관

기관명	반명	아동명	성별	생년월일(만나이)	담임교사

1)결석 날짜 (일수누계)	아동안전 확인방법	아동안전 확인일자	안전확인 결과	출석 예정일	점검 및 조치 결과						아동학대 신고 판단 이유	통화자	비고 (신고일, 기타사항 등)
					합동점검				아동학대 상담 또는 신고				
					2)합동점검 (O,X)	점검자 (소속)	연락처	동행일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O,X)	112 신고 (O,X)			
24-00-00 (1일)	전화	24.00.00.	통화안됨								판단보류		지속적 통화 시도
24-00-00 (2일)	가정방문	24.00.00.	면담거부		0	000 (유치원) 000 (00동 행정복지 센터)		24.11.25. (16:00~ 16:30)		0	학대 징후 의심 (소재불명)		24.00.00. 신고
24-00-00 (1일)	전화	24.00.00.	친지방문	24.00.00.								어머니	

- 1) 결석날짜: 일수누계는 연속하여 무단결석·미인정결석한 일수를 말하며 추후에 무단결석·미인정결석 발생 시 1일부터 다시 산정
- 2) 합동점검: 유관기관(읍면동주민자치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과 동행하여 가정방문을 실시한 경우를 말함

양식 4

영유아 면담(관찰) 정보 제공 동의서

본 동의서는 00시 소속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영유아 면담(관찰) 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며 보호자의 동의 거부 시 본 면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면담(관찰) 시 전문가가 기관에 방문하여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혹 영유아가 거부하거나 불편해 할 경우, 강압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며 바로 종료합니다. 아래 내용을 작성하여 00.00.( )까지 OO소식함에 넣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명	성 명	
	생년월일	
보호자 (영유아와의 관계: )	성 명	
	생년월일	
개인정보 요청 내용	영유아 면담(관찰)에 대한 동의	
사용 목적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영유아 면담(관찰)을 위해 사용	
면담 일정	202 . . . ( ) 오전 00:00~	
동의서 유효기간	202 . . . ( ) ~ 조사 완료 시	
동의 거부권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면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 신청인과 신청인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기관에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요

▶ 귀하의 자녀가 000시 소속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면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요

영유아명: \_\_\_\_\_ 의 보호자: \_\_\_\_\_ (서명)

202 . . . .

OO 어린이집/유치원장 귀하

양식 5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와 양육을 위한 보호자 동의서 (유치원)**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드러난 아동학대는 모든 영역에서 유아의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은 아동 안전을 위해 미인정결석에 대한 관리와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근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보호자님, 유아의 결석은 반드시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결석 시 사전에 유치원으로 연락하지 않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 1일차에는 담임교사가 가정으로 전화 연락을 실시합니다.
- 2일차에도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가정방문**을 실시합니다.
- 가정방문 결과 아동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소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로 판단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합니다.

**미인정결석 시 정보제공 및 가정방문 동의서**

정보제공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1. 수집이용목적: 유아 소재·안전 파악 2. 수집항목: 유아명, 학급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보호자명 3. 이용 및 보유기간: 해당 업무 종료 시까지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미인정결석 유아의 소재·안전 파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제공받는 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지자체(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유아 소재·안전 파악 3. 제공하는 항목: 수집항목과 일치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해당업무 종료 시까지 5.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미인정결석 유아의 소재·안전 파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 동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가정방문 동의**

1. 이용목적: 아동 소재·안전 파악 2.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미인정결석 유아의 소재·안전 파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가정방문 동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반 명	반	유아명	
보호자(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유치원장 귀하

## 양식 6

## 자퇴신청서(퇴학신청서) 양식 (유치원)

## 자퇴신청서(퇴학신청서)

반 명		성 명	
성 별	(남 ·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자퇴사유	<input type="checkbox"/> 이 사	주소:	
	<input type="checkbox"/> 기관이동	이동 기관명: 【유치원으로 이동 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유치원생활기록부 송부 동의 <input type="checkbox"/>예 <input type="checkbox"/>아니오</div>	
	<input type="checkbox"/> 기 타		
	<input type="checkbox"/> 가정양육	※ 유아 동반 또는 전화로 유아와 통화하여 소재·안전을 확인하였습니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가정양육으로 전환 시 양육수당 대상임을 안내 받았습니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자퇴(퇴학)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유치원장 귀하

## 양식 6-1

## 퇴소신청서 양식 (어린이집)

퇴소신청서				
아동 성명	아동 생년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아동과의관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퇴소 희망일				
어린이집명	주소			
원장 성명	전화			
상기와 같이 퇴소를 신청하며 신청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원장) 성명 (서명 또는 인)				
000어린이집 원장 귀하				





## 2. 유관기관 목록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학대 담당자 연락망

#### ①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시·도 및 시·군·구 연락처

지역	기관	부서	관할지역	업무연락처	
서울	서울특별시청	여성가족실 영유아담당관	서울특별시	02-2133-5121	
	종로구	복지교육국 아동복지과	종로구	02-2148-2982	
	중구	복지환경국 가족정책과	중구	02-3396-5416	
	용산구	생활지원국 가족정책과	용산구	02-2199-7164	
	성동구	복지국 영유아과	성동구	02-2286-6871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	광진구	02-450-7547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보육여성과	동대문구	02-2127-4355	
	종량구	생활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종량구	02-2094-6952	
	성북구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성북구	02-2241-2556	
	강북구	복지국 청소년과	강북구	02-901-2522	
	도봉구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도봉구	02-2091-3123	
	노원구	주민복지국 보육지원과	노원구	02-2116-3731	
	은평구	주민복지국 보육지원과	은평구	02-351-7123	
	서대문구	복지문화체육국 가족정책과	서대문구	02-330-1804	
	마포구	복지동행국 아동보육과	마포구	02-3153-8908	
	양천구	주민복지국 보육정책과	양천구	02-2620-4844	
	강서구	복지가족국 출산보육과	강서구	02-2600-5474	
	구로구	복지지원국 가족보육과	구로구	02-860-3015	
	금천구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금천구	02-2627-1423	
	영등포구	복지국 보육지원과	영등포구	02-2670-3361	
	동작구	미래교육국 영유아보육과	동작구	02-820-9719	
	관악구	복지가족국 여성가족과	관악구	02-879-6113	
	서초구	주민생활국 여성보육과	서초구	02-2155-6711	
	강남구	복지생활국 보육지원과	강남구	02-3423-8989	
	송파구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송파구	02-2147-2777	
	강동구	복지가족국 보육지원과	강동구	02-3425-5960	
	부산	부산광역시청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	부산광역시	051-888-1614
		중구	주민복지국 가족행복과	중구	051-600-4354
서구		주민복지국 가족행복과	서구	051-240-4364	
동구		경제복지국 가족복지과	동구	051-440-4861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영도구	051-419-4386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	부산진구	051-605-4375	
동래구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동래구	051-550-4896	
남구		복지교육국 가족친화과	남구	051-607-4344	
북구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	북구	051-309-4355	
해운대구		생활복지국 가족복지과	해운대구	051-749-4361	
사하구		주민복지국 가족행복과	사하구	051-220-5648	
금정구		복지교육국 가족정책과	금정구	051-519-4375	
강서구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강서구	051-970-2322	
연제구		복지교육국 가족정책과	연제구	051-665-4657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수영구	051-610-4321	
사상구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	사상구	051-310-4722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기장군	051-709-4648	

지역	기관	부서	관할지역	업무연락처
대구	대구광역시청	청년여성교육국 출산보육과	대구광역시	053-803-5473
	중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중구	053-661-2603
	동구	복지생활국 아동청소년과	동구	053-662-2532
	서구	교육문화국 아동보육과	서구	053-663-2684
	남구	복지환경국 복지지원과	남구	053-664-2622
	북구	복지환경국 여성아동과	북구	053-665-2036
	수성구	복지국 아동보육과	수성구	053-666-4607
	달서구	복지증진국 아동가족과	달서구	053-667-3525
인천	달성군	기획전략국 교육정책과	달성군	053-668-2354
	군위군	주민복지실	군위군	054-380-6923
	인천광역시청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	인천광역시	032-440-2899
	중구	영종행정국 여성보육과	중구	032-760-7929
	동구	복지국 여성가족과	동구	032-770-6837
	미추홀구	복지환경국 보육정책과	미추홀구	032-728-6935
	연수구	복지교통국 출산보육과	연수구	032-749-7764
	남동구	복지국 보육정책과	남동구	032-453-6043
	부평구	문화복지국 영유아보육과	부평구	032-509-3952
	계양구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계양구	032-450-5933
광주	서구	복지국 가정보육과	서구	032-560-4987
	강화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강화군	032-930-3589
	옹진군	관광복지국 사회복지과	옹진군	032-899-2333
	광주광역시청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광주광역시	062-613-3144
	동구	복지환경국 여성아동과	동구	062-608-2662
	서구	통합복지국 양성평등과	서구	062-360-7961
	남구	인구가족담당관	남구	062-607-3523
	북구	복지교육국 여성보육과	북구	062-410-6415
대전	광산구	상생복지국 여성아동과	광산구	062-960-8418
	대전광역시청	복지국 아동보육과	대전광역시	042-270-0693
	동구	여성아동과	대전 동구	042-251-4535
	중구	여성아동과	대전 중구	042-606-7204
	서구	아동복지과	대전 서구	042-288-3232
	유성구	아동복지과	대전 유성구	042-611-2937
울산	대덕구	가족친화과	대전 대덕구	042-608-6976
	울산광역시청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울산광역시	052-229-3435
	중구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중구	052-290-4922
	남구	복지가족국 보육지원과	남구	052-226-5703
	동구	교육복지국 아동가족과	동구	052-209-3922
	북구	복지교육국 가족정책과	북구	052-241-7682
세종	울주군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울주군	052-204-1025
	세종특별자치시청	보건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세종특별자치시	044-300-4922~5
경기	경기도청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경기도	031-8008-2596
	수원시	아동돌봄과	수원시	031-228-3236
	장안구	가정복지과	장안구	031-228-5197
	권선구	가정복지과	권선구	031-228-6402
	팔달구	가정복지과	팔달구	031-228-7258
	영통구	가정복지과	영통구	031-228-8425
	성남시	아동보육과	성남시	031-729-2934
	수정구	가정복지과	수정구	031-729-5301
	중원구	가정복지과	중원구	031-729-6301
	분당구	가정복지과	분당구	031-729-7252
의정부시	여성보육과	의정부시	031-828-4313	

지역	기관	부서	관할지역	업무연락처
경기	안양시	여성가족과	안양시	031-8045-2278
	만안구	복지문화과	만안구	031-8045-3318
	동안구	복지문화과	동안구	031-8045-4346
	부천시	아동보육과	부천시	032-625-3925
	원미구	사회복지2과	원미구	032-625-5310
	소사구	사회복지과	소사구	032-625-6310
	오정구	사회복지과	오정구	032-625-7310
	광명시	보육정책과	광명시	02-2680-6842
	평택시	여성보육과	평택시	031-8024-3051
	동두천시	여성청소년과	동두천시	031-860-2454
	안산시	여성보육과	안산시	031-481-3946
	상록구	주민복지과	상록구	031-481-6212
	단원구	주민복지과	단원구	031-481-5213
	고양시	아동보육과	고양시	031-8075-3361
	덕양구	가정복지과	덕양구	031-8075-5423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일산동구	031-8075-6432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일산서구	031-8075-7429
	과천시	가족아동과	과천시	02-3677-2267
	구리시	가족복지과	구리시	031-550-2956
	남양주시	보육정책과	남양주시	031-590-8382
	오산시	가족보육과	오산시	031-8036-7496
	시흥시	여성보육과	시흥시	031-310-2662
	군포시	여성가족과	군포시	031-390-0544
	의왕시	가족아동과	의왕시	031-345-2457
	하남시	보육정책과	하남시	031-790-5772
	용인시	아동보육과	용인시	031-6193-3280
	처인구	사회복지과	처인구	031-324-5313
	기흥구	가정복지과	기흥구	031-324-6317
	수지구	사회복지과	수지구	031-324-8315
	파주시	보육아동과	파주시	031-940-4483
	이천시	여성보육과	이천시	031-645-3637
	안성시	사회복지과	안성시	031-678-2263
	김포시	아동보육과	김포시	031-980-5332
	화성시	영유아보육과	화성시	031-5189-3867
	광주시	아동보육과	광주시	031-760-3709
	양주시	가족보육과	양주시	031-8082-5821
	포천시	교육정책과	포천시	031-538-3264
	여주시	가족복지과	여주시	031-887-2599
	연천군	사회복지과	연천군	031-839-269
	가평군	행복돌봄과	가평군	031-580-2264
	양평군	가족복지과	양평군	031-770-2141
	강원	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정책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보육아동과	춘천시	033-250-3110
원주시		보육아동과	원주시	033-737-2753
강릉시		아동보육과	강릉시	033-640-5747
동해시		가족과	동해시	033-539-8516
태백시		사회복지과	태백시	033-550-2276
속초시		교육가족지원과	속초시	033-639-2045
삼척시		복지정책과	삼척시	033-570-3856
홍천군		행복나눔과	홍천군	033-430-2147
횡성군		가족복지과	횡성군	033-340-2183

지역	기관	부서	관할지역	업무연락처
강원	영월군	여성가족과	영월군	033-370-2683
	평창군	가족복지과	평창군	033-330-2316
	정선군	가족행복과	정선군	033-560-2968
	철원군	주민생활지원과	철원군	033-450-4676
	화천군	주민복지과	화천군	033-440-2343
	양구군	사회복지과	양구군	033-480-2491
	인제군	체육청소년과	인제군	033-460-2283
	고성군	복지과	고성군	033-680-3662
양양군	육아지원센터	양양군	033-670-2778	
충청	충청북도청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충청북도	043-220-3052
	청주시	여성가족과	청주시	043-201-1786
	상당구	주민복지과	상당구	043-201-5172
	서원구	주민복지과	서원구	043-201-6172
	흥덕구	주민복지과	흥덕구	043-201-7175
	청원구	주민복지과	청원구	043-201-8173
	충주시	여성청소년과	충주시	043-850-6881
	제천시	여성가족과	제천시	043-641-5422
	보은군	주민복지과	보은군	043-540-3833
	옥천군	복지정책과	옥천군	043-730-3324
	영동군	가족행복과	영동군	043-740-3762
	증평군	행복돌봄과	증평군	043-835-4815
	진천군	가족친화과	진천군	043-539-3974
	괴산군	가족행복과	괴산군	043-830-3423
	음성군	사회복지과	음성군	043-871-3384
	단양군	주민복지과	단양군	043-420-2142
충남	충청남도청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충청남도	041-635-4868
	천안시	아동보육과	천안시	041-521-3668
	동남구	주민복지과	천안시 동남구	041-521-4253
	서북구	주민복지과	천안시 서북구	041-521-6251
	공주시	여성가족과	공주시	041-840-8172
	보령시	가족지원과	보령시	041-930-3471
	아산시	아동보육과	아산시	041-540-7931
	서산시	여성가족과	서산시	041-660-3360
	논산시	아동복지돌봄과	논산시	041-746-5872
	계룡시	가족돌봄과	계룡시	041-840-2292
	당진시	여성가족과	당진시	041-350-3731
	금산군	인구교육가족과	금산군	041-750-4152
	부여군	가족행복과	부여군	041-830-2519
	서천군	인구정책과	서천군	041-950-4344
	청양군	복지정책과	청양군	041-940-2094
	홍성군	가정행복과	홍성군	041-630-1637
	예산군	가족지원과	예산군	041-339-7936
	태안군	가족정책과	태안군	041-670-2781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청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정책과	전북
전주시		아동복지과 아동보호팀	전주시	063-281-8473
군산시		복지환경국 아동정책과	군산시	063-454-4212
익산시		복지교육국 아동보육과	익산시	063-859-5192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정읍시	063-539-5532
남원시		자치행정국 여성가족과	남원시	063-620-6216
김제시		경제복지국 가족복지과	김제시	063-540-1391
완주군		문화관광복지국 인구가족과	완주군	063-290-3872

지역	기관	부서	관할지역	업무연락처
전북	진안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진안군	063-430-2413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무주군	063-320-2966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장수군	063-350-2102
	임실군	복지환경국 여성청소년과	임실군	063-640-2124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순창군	063-650-1263
	고창군	관광복지국 인재양성과	고창군	063-560-2937
	부안군	관광복지국 교육청소년과	부안군	063-580-4682
전남	전라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	전라남도	061-286-5932
	목포시	여성가족과	목포시	061-270-3354
	여수시	여성가족과	여수시	061-659-3768
	순천시	보육아동과	순천시	061-749-6298
	나주시	가족아동과	나주시	061-339-8622
	광양시	아동보육과	광양시	061-797-2778
	담양군	향촌복지과	담양군	061-380-2633
	곡성군	주민복지과	곡성군	061-360-8251
	구례군	평생교육과	구례군	061-780-2818
	고흥군	여성가족과	고흥군	061-830-5342
	보성군	가족행복과	보성군	061-850-5312
	화순군	가정활력과	화순군	061-379-3571
	장흥군	노인아동과	장흥군	061-860-5884
	강진군	군민행복과	강진군	061-430-3176
	해남군	가족행복과	해남군	061-530-5433
	영암군	가족행복과	영암군	061-470-2341
	무안군	가족행복과	무안군	061-550-5273
	함평군	가족행복과	함평군	061-320-1494
	영광군	가족행복과	영광군	061-350-5548
	장성군	가족행복과	장성군	061-390-7412
완도군	가족행복과	완도군	061-550-5273	
진도군	가족행복과	진도군	061-540-1287	
신안군	교육복지과	신안군	061-240-8432	
경북	경상북도청	저출생극복본부 아이돌봄과	경상북도	054-880-4733
	포항시(남구, 북구)	복지국 여성가족과	포항시, 남구, 북구	054-270-3734
	경주시	시민행정국 장애인여성복지과	경주시	054-779-6661
	김천시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김천시	054-420-6471
	안동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안동시	054-840-5275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아이돌봄과	구미시	054-480-6557
	영주시	문화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영주시	054-639-6082
	영천시	문화관광복지국 가족행복과	영천시	054-330-6211
	상주시	행정복지국 아이여성행복과	상주시	054-537-7879
	문경시	행정복지국 여성청소년과	문경시	054-550-8967
	경산시	복지문화국 아동청소년과	경산시	053-810-5401
	의성군	기획조정실 가족복지과	의성군	054-830-6212
	청송군	주민행복과	청송군	054-870-6215
	영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영양군	054-680-6282
	영덕군	행정복지지원국 가족지원과	영덕군	054-730-6213
	청도군	행정복지국 평생보장과	청도군	054-370-2213
	고령군	가족행복과	고령군	054-950-6208
	성주군	가족지원과	성주군	054-930-6977
	칠곡군	행복복지국 교육아동복지과	칠곡군	054-979-6662
	예천군	주민행복과	예천군	054-650-6214
봉화군	가족청소년과	봉화군	054-679-6113	

지역	기관	부서	관할지역	업무연락처
경북	울진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울진군	054-789-6701
	울릉군	문화체육과	울릉군	054-790-6219
경남	경상남도청	복지여성국 보육정책과	경상남도	054-380-6923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아동청소년과	창원시	055-225-3974
	의창구	가정복지과	의창구	055-212-4373
	성산구	가정복지과	성산구	055-272-4371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	마산합포구	055-220-4374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	마산회원구	055-230-4373
	진해구	가정복지과	진해구	055-548-4373
	진주시	아동보육과	진주시	055-745-1391
	통영시	여성가족과	통영시	055-650-4632
	사천시	여성가족과	사천시	055-831-2676
	김해시	아동청소년과	김해시	055-330-6601
	밀양시	사회복지과	밀양시	055-359-5429
	거제시	가족정책과	거제시	055-639-4974
	양산시	아동보육과	양산시	055-392-3854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	산청군	055-570-2253
	함안군	주민복지과	함안군	055-580-2384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	창녕군	055-530-1414
	고성군	교육청소년과	고성군	055-670-4653
	남해군	주민행복과	남해군	055-860-8648
	하동군	가족정책과	하동군	055-880-2816
산청군	행복나눔과	산청군	055-970-6874	
함양군	사회복지과	함양군	055-960-4833	
거창군	행복나눔과	거창군	055-940-3782	
합천군	노인아동여성과	합천군	055-930-3263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제주도	064-710-2374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제주시	064-728-2672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064-760-6459

② 유치원 아동학대 관련 교육(지원)청 연락처

지역	기관	부서	관할지역	업무연락처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유아교육과	서울특별시	02-399-9009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지원과	동대문구, 중랑구	02-2210-1222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지원과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02-390-5522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지원과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02-2165-0232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지원과	노원구, 도봉구	02-3499-6822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지원과	용산구, 종로구, 중구	02-708-6524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지원과	강동구, 송파구	02-3434-4322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지원과	강서구, 양천구	02-2600-0821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지원과	강남구, 서초구	02-3015-3321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지원과	동작구, 관악구	02-810-8322
부산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지원과	광진구, 성동구	02-2286-3621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지원과	강북구, 성북구	02-944-9322
	부산광역시교육청	유초등보육정책관 유초등교육과	부산광역시	051-860-0284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유초등교육지원과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051-250-0422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유초등교육지원과	남구, 부산진구, 동구	051-640-0222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유초등교육지원과	강서구, 북구, 사상구	051-330-1222
대구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유초등교육지원과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051-550-0131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유초등교육지원과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051-709-0342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대구광역시	053-231-0046
	동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동부	053-232-0061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서부	053-233-0061
	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남부	053-234-0053
인천	달성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달성	053-235-0033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군위군	054-380-4206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학교생활교육과	인천광역시	032-420-8488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과	미추홀구, 중구, 동구, 옹진군	032-770-0115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과	부평구, 계양구	032-510-5431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과	남동구, 연수구	032-460-6032
광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과	서구	032-560-6625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초등교육팀	강화군	032-930-7754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광주광역시	062-380-4472
대전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유초등교육지원과	동구, 북구	062-605-5545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유초등교육지원과	서구, 남구, 광산구	062-600-9831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대전광역시	042-616-8275
울산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	동구, 중구, 대덕구	042-229-1023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	서구, 유성구	042-530-1043
세종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유아특수교육과	울산광역시	052-210-5418
경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유초등교육과	세종특별자치시	044-320-2113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	경기도 전체	031-820-0710
	가평교육지원청	교육과	경기도 가평군	031-5175-8865
	고양교육지원청	교육국 초등교육지원과	고양시	031-900-2810
	광명교육지원청	교육과	광명시	02-2610-0576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국 중등교육지원과	광주시, 하남시	031-280-7115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과	군포시, 의왕시	(031) 390-1119
	김포교육지원청	교육과	김포시	031-980-1230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국 초등교육지원과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031-550-6122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과	동두천시, 양주시	031-860-4314
	부천교육지원청	행정국 기획경영과	부천시	032-620-0264

지역	기관	부서	관할지역	업무연락처	
경기	성남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성남시	031-780-2647	
	수원교육지원청	교육국 초등교육지원과	수원시	031-250-1363	
	안산교육지원청	교육국 초등교육지원과	안산시	031-412-4527(8)	
	안성교육지원청	교육과	안성시	031-678-5276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국 중등교육지원과	안양시, 과천시	031-380-7089	
	양평교육지원청	교육과	양평군	031-770-5641	
	여주교육지원청	교육과	여주시	031-880-2345	
	연천교육지원청	교육과	연천군	031-839-0160	
	용인교육지원청	교육국 초등교육지원과	경기도 용인시	031-8020-9225 031-8020-9226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과	의정부시	031-820-0022	
	이천교육지원청	교육과	이천시	031-645-1646	
	파주교육지원청	교육국 초등교육지원과	파주시	031-940-7205	
	평택교육지원청	교육국 중등교육지원과	평택시	031-650-1556	
	포천교육지원청	교육과	포천시	031-539-0142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국 초등교육지원과	화성시, 오산시	031-371-0625	
	시흥교육지원청	교육국 중등교육지원과	시흥시	031-488-4552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유치등교육과	강원특별자치도	033-258-0413	
	춘천교육지원청	교육과	춘천시	033-259-1645	
	원주교육지원청	교육과	원주시	033-760-5642	
	강릉교육지원청	교육과	강릉시	033-640-1212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과	속초시, 양양군	033+639-6025	
	동해교육지원청	교육과	동해시	033-530-3021	
	태백교육지원청	교육과	태백시	033-580-5580	
	삼척교육지원청	교육과	삼척시	033-570-5142	
	홍천교육지원청	교육과	홍천군	033-430-1127	
	횡성교육지원청	교육과	횡성군	033-340-0360	
	영월교육지원청	교육과	영월군	033-370-1141	
	평창교육지원청	교육과	평창군	033-330-1791	
	정선교육지원청	교육과	정선군	033-560-8160	
	철원교육지원청	교육과	철원군	033-450-1086	
	화천교육지원청	교육과	화천군	033-430-1561	
	양구교육지원청	교육과	양구군	033-480-1472	
	인제교육지원청	교육과	인제군	033-460-1071	
	고성교육지원청	교육과	고성군	033-680-6025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충청북도	043-290-2264
		청주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	청주시	043-299-3131
충주교육지원청		교육과	충주시	043-850-0604	
제천교육지원청		교육과	제천시	043-640-6651	
보은교육지원청		교육과	보은군	043-540-5552	
옥천교육지원청		교육과	옥천군	043-730-4221	
영동교육지원청		교육과	영동군	043-740-7711	
진천교육지원청		교육과	진천군	043-530-5312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과	괴산군, 증평군	043-830-5012	
음성교육지원청		교육과	음성군	043-871-5014	
충남	단양교육지원청	교육과	단양군	043-420-6161	
	충남교육청	교육국 교육과정과	충청남도	041-640-7233	
	천안교육지원청	교육국 초등교육과	천안시	041-529-0556	
공주교육지원청	교육과	공주시	041-850-2331		

지역	기관	부서	관할지역	업무연락처
해남	보령교육지원청	교육과	보령시	041-930-9370
	아산교육지원청	교육과	아산시	041-539-2420
	서산교육지원청	체육인성건강과	서산시	041-660-0320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체육인성건강과	논산시, 계룡시	041-730-7140
	당진교육지원청	체육인성건강과	당진시	041-351-2540
	금산교육지원청	교육과	금산군	041-750-8851
	부여교육지원청	교육과	부여군	041-830-8280
	서천교육지원청	교육과	서천군	041-950-6090
	청양교육지원청	교육과	청양군	041-940-4440
	홍성교육지원청	교육과	홍성군	041-630-5550
	예산교육지원청	교육과	예산군	041-330-3640
태안교육지원청	교육과	태안군	041-670-8238	
전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	전북특별자치도	063-237-0355
	전주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	전주시	063-270-6122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군산시	063-450-2634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익산시	063-850-8818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정읍시	063-530-3032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남원시	063-620-7814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김제시	063-540-2568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완주군	063-270-7615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진안군	063-430-6277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무주군	063-320-5111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장수군	063-350-5210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임실군	063-640-3521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순창군	063-650-6161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고창군	063-560-1671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부안군	063-580-7413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유아교육팀	전라남도	061-260-0393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유초등교육팀)	목포시	061-280-6611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유초등교육팀)	여수시	061-690-5513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유초등교육팀)	순천시	061-729-7753
	나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생활인권팀)	나주시	061-330-0112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유초등교육팀)	광양시	061-760-3306
	담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유초등교육팀)	담양군	061-380-8112
	곡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유초등교육팀)	곡성군	061-360-6630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생활인권팀)	구례군	061-780-6611
	고흥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생활인권팀)	고흥군	061-830-2055
	보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체육복지팀)	보성군	061-850-7130
	화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생활인권팀)	화순군	061-370-7151
	장흥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생활인권팀)	장흥군	061-860-1237
	강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체육복지팀)	강진군	061-430-1510
	해남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체육복지팀)	해남군	061-530-1122
	영암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생활인권팀)	영암군	061-470-4201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유초등교육팀)	무안군	061-450-7012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생활인권팀)	함평군	061-320-6615
	영광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생활인권팀)	영광군	061-350-6611
	장성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생활인권팀)	장성군	061-390-6111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유초등교육팀)	완도군	061-550-0512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유초등교육팀)	진도군	061-540-5121	
신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유초등교육팀)	신안군	061-240-3611	

지역	기관	부서	관할지역	업무연락처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경상북도	054-805-3325
	포항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	포항시	054-288-6731~2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주시	054-740-9152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김천시	054-420-5252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안동시	054-851-9215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구미시	054-440-2316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영주시	054-630-4206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영천시	054-330-2314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상주시	054-530-2351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문경시	054-550-5512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산시	054-810-7513
	의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의성군	054-830-1121
	청송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청송군	054-870-1112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영양군	054-680-2241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영덕군	054-730-8022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청도군	054-370-1111
	고령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고령군	054-950-2512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성주군	054-930-2052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칠곡군	054-979-2118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예천군	054-650-2571
봉화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봉화군	054-679-1732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울진군	054-780-3331	
울릉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울릉군	054-790-3026	
경남	경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유아특수교육과	경상남도	055-268-1454 055-268-1147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초등교육담당)	고성군	055-670-8150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평생체육담당)	의령군	055-570-7130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중등교육담당)	거제시	055-630-9213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평생체육담당)	함양군	055-960-2740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유아특수담당)	양산시	055-379-3040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학교교육지원센터)	거창군	055-940-6125
	산청교육지원청	학교교육지원센터(wee 센터)	산청군	055-970-3039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초등교육담당)	합천군	055-930-7020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초등교육담당)	하동군	055-880-1913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초등교육담당)	사천시	055-830-1512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유아·초등교육담당)	진주시	055-740-2014
	창원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유아교육담당)	창원시(창원, 마산, 진해)	055-210-0353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초등교육담당)	남해군	055-860-4112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교육지원센터(Wee센터))	창녕군	055-530-3508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평생체육담당)	함안군	055-580-8040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초등교육담당)	밀양시	055-350-1513
	통영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통영시	055-650-8055
	김해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유아특수담당)	김해시	055-330-9636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제주도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제주시	064-754-125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서귀포시	064-730-8131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연락망

시도명	시군구명	긴급전화 번호
서울	강남구	02-545-1391
	강동구	02-3425-8877
	강북구	02-901-2522
	강서구	02-2600-5433
	관악구	02-879-6193
	광진구	02-450-1474
	구로구	02-860-2602
	금천구	02-2627-2391
	노원구	02-974-1391
	도봉구	02-2091-2391
	동대문구	02-2127-4279
	동작구	02-820-9642
	마포구	02-3153-8900
	서대문구	02-330-1391
	서초구	02-2155-8910
	성동구	02-2286-6666
	성북구	02-2241-2662
	송파구	02-2147-3816
	양천구	02-2620-3391
	영등포구	02-2670-1618
부산	용산구	02-2199-7139
	은평구	02-351-6201
	종로구	02-2148-2982
	중구	02-3396-5562
	중랑구	02-2094-6952
	중구	051-466-1391
	서구	051-241-1391
	동구	051-440-4848
	영도구	051-416-1391
	부산진구	051-803-1391
	동래구	051-553-1391
	남구	051-607-3400
	북구	051-302-1391
	해운대구	051-781-1391
	사하구	051-292-1391
	금정구	051-518-1391
	강서구	051-974-1391
	연제구	051-851-1391
	수영구	051-611-1391
	사상구	051-310-5112
기장군	051-722-1391	
대구	중구	053-423-1391
	동구	053-956-1391
	서구	053-566-1391
	남구	053-472-1391
	북구	053-351-1391
수성구	053-666-1391	

시도명	시군구명	긴급전화 번호
대구	달서구	053-631-1391
	달성군	053-262-1391
	군위군	054-383-1391
인천	중구	032-751-1391
	동구	032-777-1391
	미추홀구	032-881-1391
	부평구	032-509-1391
	옹진군	032-883-1391
	서구	032-565-1391
	계양구	032-549-1391
	강화군	032-933-1391
	남동구	032-472-1391
	연수구	032-813-1391
광주	북구	062-515-1391
	동구	062-608-8820
	남구	062-671-1391
	서구	062-601-0391
	광산구	062-941-1391
대전	동구	042-285-1391
	중구	042-222-1391
	서구	042-471-1391
	유성구	042-863-1391
	대덕구	042-626-1391
울산	중구	052-292-1391
	동구	052-235-1391
	북구	052-289-1391
	남구	052-261-1391
	울주군	052-204-1391
세종	세종시	044-865-1391
	과천시	02-3418-1391
경기	군포시	031-397-1391
	의왕시	031-455-1391
	의정부시	031-828-2112
	양주시	031-8082-5848
	동두천시	031-858-1391
	연천군	031-834-1391
	포천시	031-532-1391
	성남시	031-722-1391
	광주시	031-760-1799
	하남시	010-9285-1391
	양평군	031-771-1391
	고양시	031-966-1391
	파주시	080-500-1391
	김포시	031-980-2278
	부천시	032-625-3868
	화성시	031-5189-1391
	오산시	031-374-1391
	구리시	031-558-1391
	남양주시	031-579-6700
	가평군	031-581-1391

시도명	시군구명	긴급전화 번호
경기	안산시	031-481-3319
	용인시	031-324-2915
	이천시	031-645-3649
	여주시	031-883-4-1391
	시흥시	031-312-1391
	평택시	031-652-1391
	안성시	031-676-1391
	수원시	031-226-1391
	광명시	02-2681-1391
	안양시	031-383-1391
강원	춘천시	033-250-3991
	원주시	033-737-2590
	강릉시	033-648-1391
	동해시	033-534-1391 (010-4327-1391)
	태백시	033-552-1391
	속초시	033-635-1391
	삼척시	033-573-1392
	홍천군	033-430-2119
	횡성군	033-342-1391
	영월군	010-9635-1391
	평창군	033-330-1391
	정선군	033-560-2988
	철원군	033-452-1371
	화천군	033-442-1391
	양구군	010-6818-1391
	인제군	010-9473-2283
	고성군	033-681-1391
양양군	033-671-1391	
충북	청주시	043-201-1391
	충주시	043-842-1391
	제천시	043-643-1391
	보은군	043-542-1391
	옥천군	043-733-1391
	영동군	043-742-1391
	증평군	043-836-3391
	진천군	043-537-1391
	괴산군	043-832-1391
	음성군	043-872-1391
단양군	043-421-1391	
충남	천안시	041-566-1391
	아산시	041-533-1391
	당진시	041-358-1391
	금산군	041-751-1391
	공주시	041-853-1391
	논산시	041-736-1391
	계룡시	042-840-3697
	부여군	041-834-1391
	서천군	041-952-1391
예산군	041-331-1391	

시도명	시군구명	긴급전화 번호
충남	청양군	041-943-1391
	홍성군	041-635-1391
	보령시	041-931-1391
	서산시	041-662-1391
	태안군	041-673-1391
전북	전주시	063-285-1391
	완주군	063-241-1391
	진안군	063-432-1391
	정읍시	063-536-1391
	익산시	063-843-1391
	군산시	063-451-1391
	김제시	063-540-1391 010-6767-1391
	부안군	063-584-1391
	고창군	063-564-1391
	임실군	063-644-1391
	무주군	063-324-1391
	남원시	063-626-1391
	순창군	063-653-1391
	장수군	063-350-2127 010-4035-1391
	전남	곡성군
순천시		061-746-1391
구례군		061-781-1391
광양시		061-791-1391
보성군		061-852-1391
고흥군		061-832-1391
여수시		061-659-5367
영암군		061-472-1391
강진군		061-433-1391
목포시		061-276-1391
무안군		061-452-1390
신안군		061-262-1391
해남군		061-537-1391
완도군		061-555-1391
진도군		061-540-1391
영광군		061-353-1391
장성군		061-395-1391
담양군		061-380-2833
화순군		061-371-1391
나주시		061-331-1391
함평군	061-322-1391	
장흥군	061-863-1391	
경북	경산시	053-812-1391
	청도군	054-373-1391
	의성군	054-832-1391
	영천시	054-334-1391
	경주시	054-777-1391
문경시	054-552-1391	

시도명	시군구명	긴급전화 번호
경북	영주시	010-8937-1391 010-3597-1392
	봉화군	054-674-1391
	예천군	054-654-1391
	안동시	054-852-1391
	영양군	054-680-6296
	청송군	054-873-1391
	영덕군	054-730-6428
	울진군	054-789-6271 010-7380-1391
	포항시	054-270-1391
	울릉군	054-790-6219
	고령군	054-956-1391
	칠곡군	054-971-1391
	성주군	054-932-1391
	구미시	054-452-1391
	김천시	054-431-1391 010-9694-1391 010-9695-1391
	상주시	054-534-1391
경남	양산시	055-382-1391
	밀양시	055-356-1391
	창원시	055-263-1391
	창녕군	055-533-1391
	의령군	055-572-1391
	함안군	055-585-1391
	고성군	055-674-1391
	통영시	055-650-1391
	거제시	055-633-1391
	합천군	055-933-1391 010-4378-1391
	진주시	055-745-1391
	사천시	055-832-1391
	산청군	055-970-6391
	하동군	055-884-1391
	남해군	055-862-1391
	거창군	055-945-1391
함양군	055-964-1391	
김해시	055-359-1391	
제주	제주시	064-728-2671
	서귀포시	064-760-6454

## 아동보호전문기관 연락망

구분	기관명	전화번호	관할구역
서울	서울특별시	02-2040-4200	-
	서울특별시동부	02-2247-1391	중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서울서남	02-3665-5183~5	강서구, 양천구
	서울서북	02-3157-1391	은평구, 종로구
	서울남부	02-842-0094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울북부	02-923-5440	도봉구, 강북구
	서울중부	02-422-1391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서울동남권	02-474-1391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서울노원구	02-974-1391	노원구
	서울성북구	02-2039-5472	성북구
서울동작구	02-829-3041~46	동작구	
부산	부산광역시	051-240-6300	-
	부산동부	051-715-1391	해운대구, 금정구, 동래구, 기장군
	부산서부	051-711-1391	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부산남부	051-791-1360~5	남구, 동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부산진구	051-711-1361	부산진구
대구	대구광역시	053-422-1391	중구, 동구, 서구, 수성구, 군위군
	대구남부	053-623-1391	달서구, 남구
	대구북부	053-710-1391	북구, 달성군
인천	인천광역시	032-434-1391	미추홀구
	인천북부	032-515-1391	계양구, 부평구
	인천남부	032-424-1391	남동구, 연수구
	인천서부	032-563-0153	서구
광주	인천중부	032-765-1391	중구, 동구, 용진군, 강화군
	광주광역시	062-385-1391	서구, 광산구
	빛고을	062-675-1391	남구, 동구, 북구
대전	대전광역시	042-254-6790	중구, 동구
	대전서부	042-716-2020	서구
	대전북부	042-710-0735	유성구, 대덕구
울산	울산광역시	052-245-9382	중구, 북구, 동구
	울산남부	052-256-1391	남구, 울주군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044-864-1393	세종시
경기도	경기도거점	031-245-2448	-
	경기성남	031-756-1391	성남시
	고양시	031-966-1391	고양시(일산동구, 일산서구, 덕양구)
	부천시	032-662-2580	부천시(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화성시	031-227-1310	화성시
	경기남양주	031-592-9818	남양주시, 가평군
	안산시	031-402-0442	안산시(단원구, 상록구)
	시흥시	031-316-1391	시흥시
	경기평택	031-652-1391	평택시, 안성시
	수원	031-8009-0080	수원시(팔달구,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광명시	02-897-1577	광명시
	안양시	031-468-9821	안양시(만안구, 동안구)
	구리시	031-523-3163	구리시

구분	기관명	전화번호	관할구역
경기도	군포시	031-391-1391	군포시
	경기광주	031-8027-0171	경기광주, 양평군
	경기의왕	031-360-1391	과천시, 의왕시
	파주시	031-839-0940	파주시
	오산시	031-8077-9610	오산시
	김포시	031-8049-3891	김포시
	경기양주	031-856-9001	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031-928-6747	의정부시
	경기포천	031-8089-8391	포천시, 연천군
	경기이천	031-8011-9161	여주시, 이천시
강원도	하남시	031-8027-8790	하남시
	강원특별자치도	033-244-1391	춘천시, 화천군, 홍천군, 양구군, 철원군
	강원동부	033-644-1391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인제군
	강원서부	033-766-1391	원주시
	강원남부	033-535-5391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충청북도	강원중부	033-344-5391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충청북도	043-216-1391	청주시
	충북북부	043-643-0943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충북남부	043-731-3685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충청남도	충북중부	043-535-1391	괴산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충청남도	041-578-2655	천안시
	충청남도남부	041-734-6640	논산시, 계룡시, 공주시, 부여군, 금산군, 서천군
전라북도	충청남도서부	041-635-1106	홍성군, 예산군, 서산시, 보령시, 태안군, 청양군
	충청남도중부	041-546-1391	아산시, 당진시
	전라북도	063-283-1391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전라북도익산시	063-852-1391	익산시
	전북동부	063-635-1391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장수군
	전라북도군산시	063-734-1391	군산시
	전주덕진	063-715-1371	전주시(덕진구)
전라남도	전주완산	063-717-1372	전주시(완산구)
	정읍시	063-700-7121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전라남도	061-753-5125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전남서부권	061-285-1391	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전남중부권	061-332-1391	나주시,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경상북도	전남북부권	061-870-7200	화순군, 담양군, 보성군, 곡성군
	전남남부권	061-880-7391	해남군, 강진군, 장흥군, 진도군, 완도군
	경북남부	054-745-1391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의성군
	경북북부	054-853-1391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영양군
경상남도	경북동부	054-284-1391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청송군
	경북서부	054-455-1391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경상남도	055-244-1391	밀양시, 고성군, 함안군, 창녕군, 의령군
	경남서부	055-757-1391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김해시	055-322-1391	김해시
	창원시	055-713-1390	창원시(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양산시	055-367-1391	양산시
	진주시	055-762-1391	진주시
제주	거제시	055-736-1391	거제시
	통영시	055-725-7391	통영시
	제주특별자치도	064-712-1391	제주시
	서귀포시	064-732-1391	서귀포시

## 연구진

- 김승혜 (유스메이트 아동 청소년 문제연구소 대표)  
변성숙 (前 경기도교육청 변호사 / 에듀로교육법률연구소 대표)  
어주경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객원교수 / 연세솔루션상담센터 공동대표)  
최희영 (유스메이트 아동 청소년 문제연구소 부대표)  
차민희 (유스메이트 아동 청소년 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집필진

- 박명금 (동은심리교육센터 소장)  
전순희 (송양유치원 원감)  
정재영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원장)  
이세라피나 (LG서울역어린이집 원장)

## 자문진

- 구현아 (구립명일사랑 어린이집 원장)  
김영미 (법무법인 승인 변호사)  
변국희 (화진초등학교 교감)  
성화영 (케이알엑스푸르니어린이집 원장)  
이완정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교수)  
조항린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 현대유치원 부원장)

## 검토진 | 연구협력관

- 김세은 (교육부 영유아안전정보과 사무관)  
박재오 (교육부 영유아안전정보과 주무관)

2024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어린이집·유치원 가이드북

발행일 2024년 10월  
발행처 교육부,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주소 [유스메이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성로1나길 5 헤이그라운드 6층  
전화 [유스메이트] 02-6956-0819  
홈페이지 [유스메이트] [www.youthmate.co.kr](http://www.youthmate.co.kr)

※ 본 연구는 교육부의 2024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본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2024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어린이집·유치원 가이드북

